

연구총서 2000-15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조 민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북한의 평화와 안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우위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없다. 평화로운 환경 즉, 직접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것 뿐 만 아니라, 평화 환경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대외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광범한 ‘평화마인드’의 확산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대결구조의 왜곡된 심성의 파악과 더불어 그에 접목된 평화의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1. 서론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평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과 7천만 한겨레의 슬기와 집약적 의지에 따라 한민족의 미래가 개척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의 고양과 더불어 전지구적 차원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사적 과업이 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주창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에 매몰되었던 한민족의 피동(被動)의 역사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에서 평등과 상호존중의 이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평화문화 : 평화를 위한 과제

2-1. 평화문화의 성격

평화문화는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갈등적인 문화적 요소를 인간 심성의 개발을 통해 상호 수평적이고 협조적인 문화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평화문화는 신뢰, 평등, 그리고 관용과 자유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 태도와 정향이다. 평화문화는 성찰적 태도, 감정이입적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려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2-2. 평화문화의 창출

평화문화는 전쟁문화가 사라지는 곳에서 싹튼다. 평화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전쟁을 유발시켜왔던 문화적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문화’(war culture)는 유럽적 경험에서 유래한 것으로, 특히 냉전시대의 행위원리로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일방의 이익은 반드시 타방의 손실인, 이른바 제로-섬 공리에 집약되어 있다. 제로-섬 명제는, ‘적’을 비합법적·비인간적 존재로 부각시켜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중재조차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제로-섬은, 통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이미 대립적인 반명제만을 낳았던 전쟁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대안적 안보 개념은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을 탈피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전망의 모색을 시도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는 첫째, 누구/무엇으로부터의 안보인가? 둘째, 누구/무엇에 의한 안보인가? 셋째, 누구/무엇을 위한 안보인가? 라는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다. 안보 연구에 있어서 국가의 성격과 위상 그 자체에 대해 보다 새로운 인식이 요청된다. 국가중심적 모델을 통해 강화되어온 사회와 안보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안보 개념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요망된다.

3. 평화의 역설 : 세력균형과 안보

3-1. 세력균형과 평화

세력균형 즉, 무력 위협을 동반한 균형은 평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세력균형론은 그 자체 불확실성, 비현실성, 부적합성의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 세력균형론은 세력균형 그 자체의 객관적 지표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서로 자기 측의 ‘힘’이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국방력 중심의 안보 논리의 강화를 가져오고, 이는 역으로 상대방의 불신과 우려를 자극하여 결국 대결과 경쟁의 악순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논리로 강조된 세력균형론의 반평화적 긴장유발적인 패러독스를 만나게 된다.

3-2. 안보와 평화

국가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가안보를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국

가이익과 국가안보는 불가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의 특성은 국가이익을 종종 국가안보 또는 군사력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데에 있다. 더욱이 국가안보를 군사력 증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군사력 중심주의의 안목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안보는 개념의 모호성과 국가안보의 상충성의 한계를 지닌다.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민족안보와 인간안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다. 평화야말로 안보의 첩경이며, 평화를 통한 안보는 국가안보와 더불어 한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민족안보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안보는 한 국가의 경제, 군사적 우위를 갖대로 삼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과는 다르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곧 세계 전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안보’는 평화와 질서, 실업문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등 전세계적 차원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기의 극복을 문제 삼는 안보 개념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안이 국가간 힘을 모아야 해결 가능한 것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권보호, 여성의 권익 향상, 지구 생태계 보전, 그리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금지 등 많은 이슈들이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할 시대이다. 따라서 인간안보 개념의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일련의 행동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3. 대안적 모색: 공동안보

안보에 합당한 조건들의 상호성에 대한 통찰은 핵무기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조건아래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그것들이 강제하는 것은 개개의 국가들에서 뿐 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을 충족시킬 관계들이 제도화되면 상호성의 조건들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적 안보’의 관념은 공동안보의 토대가 된다. 공동안보의 관념에서 과학·기술적 군사무기체제가 고도의 수준으로 발달한 현대의 정치적 안보는 적을 위해하거나 위협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적과 협력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통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는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군비감축을 통해 증진된다. 여기서 군축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의 증진과 평화 구축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4. 군축과 평화

4-1. 군산복합체: 전쟁의 경제

국가존립의 근거를 물리적 군사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증대된다. 군의 존재이유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군현대화 또는 전력증강 문제는 특정 시기의 군사적 과제가 아니라 항상적인 이슈로 제기된다. 그런데 군현대화 및 전력증강은 대단히 많은 자원 동원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군사적 논리만으로 이 과제가 추진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군현대화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군사화의 논리가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국제관계의 현실이 군사화의 근원적인 동기로 작용한다면 군산복합체는 군사화를 추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추동체라 할 수 있다.

4-2. 남북한 군축과 평화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군비통제 논리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 이라기 보다는 과학·기술 시대의 현대전쟁의 대량살상과 파괴력에 의한 상호 공멸가능성이 전면전의 형태를 억제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군비통제 논리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군비증강으로 나아가기 쉬운 군비통제 방식보다는 군비와 군대수를 줄이는 군축이 평화 실현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된다.

4-3. 한반도 평화지대화 및 탈군사화

한반도 군축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지대화와 남북한 사회의 탈

군사화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다. 남북한 모두 과대성장된 군사기구를 과감히 축소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탈군사적’ 평화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무장해제가 이루어진 지점에서 꽃핀다. 그러나 군사적 무장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군사화, 경제의 군사화에 대한 ‘문화적’ 무장해제 없이 군사적 무장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축이 정당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쉽사리 긍정할 수 없는 다양한 논리체계, 인식틀 등의 이른바 ‘문화적’ 군사화의 요인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군사력 균형이 필요하다거나, 한쪽의 일방적 군축이 다른 쪽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리 등은 대중적 인식의 기반을 가진 문화적 힘이라 할 수 있다.

5. 평화문화 형성방안

평화문화는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운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론적·정책적·실천적 부문을 망라하는 긴장의 한 가운데에 있다. 평화문화는 이처럼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운동 뿐만 아니라, 평화윤리, 평화교육, 평화봉사 등 평화와 관련된 모든 실천적 활동과 이론적 이해를 위한 노력들 사이의 모든 접점에 자리잡고 있다.

5-1. 평화연구

평화연구는 평화의 위협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들의 문제설정과 연구업적들이 단절되어서는 곤란하며 상호 연관된 노력을 통해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평화라는 공동의 과제들과 연관시키는 것이 평화연구의 목표다.

평화연구와 국제정치학은 모두 근대 국가체제의 수립과 함께 등장한 학문 영역이지만, 평화연구의 사상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은 국제정치학과 뚜렷이 대비된다. 양자는 각각의 접근방식과 독자적인 지적 계보를 지닌다. 예컨대 평화연구는 칸트적 지적 전통을 가진다면, 국제정치학은 마키아벨리적 전통 위에 있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5-2. 평화정책

평화정책은 정치사상적 전통에서는 평화 체결과 평화 유지의 기술을 의미한다. 평화정책은 평화의 현재를 지향한다. 평화정책의 이러한 전통은 전쟁은 민족들의 역사적 삶 가운데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암시적으로 전제한다. 전쟁을 제한하고 가능한 중식시키는 것,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 상태를 오래동안 유지하는 노력들은 평화정책의 목표이며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된다. 그와 같은 과제들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평화정책의 목표로 지속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한 현 단계의 한반도의 상황은 지난 세기와 같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한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조건에 처

해 있는 것은 아니다. 분단과 냉전으로부터 탈냉전과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능동적 국가로 위상을 정립해야 할 단계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통일과 대외관계의 정초를 마련할 수 있는 평화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평화구조 수립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

5-3. 평화운동

평화운동은 서구와 동구에서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사회의식의 변화는 냉전의 종식에 기여하였다. 생태학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도 먼저 인류의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인식에 의해 추동되었다.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화를 신념화시켜야 하며,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평화운동이 실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관념 속에서 머무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6. 결론

평화교육은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이러한 평화교

육은 두 측면을 지향하고 있다. 하나는 ‘평화에 관한 교육’과, 다른 하나는 ‘평화를 위한 교육’이 그것이다. ‘평화에 관한 교육’은 왜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평화를 위한 교육’은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태도, 의사결정, 행위를 이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교육이다. 전자가 주로 평화에 관한 올바른 인식의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실천 및 참여하려는 가치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화에 관한 정보, 지식, 사고 등의 교육을 중시하는 ‘평화에 관한 교육’과 함께 평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6
II. 평화문화 : 평화를 위한 과제	9
1. 평화문화의 성격	9
2. 평화문화의 창출	14
가. 전쟁문화의 극복	14
나. 안보 개념의 전환	16
III. 평화의 역설 : 세력균형과 안보	22
1. 세력균형과 평화	24
가. 세력균형: 불안한 평화	24
나. 세력균형론의 모순	26
2. 안보와 평화	31
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31
나. 국가안보와 민족안보	41
다. 새로운 안보 개념: 인간안보	45
3. 대안적 모색: 공동안보	48

IV. 군축과 평화	52
1. 군산복합체: 전쟁의 경제	52
가. 현대사회와 군사화	52
나. 군산복합체와 전쟁	58
다. NMD와 군비경쟁	62
2. 남북한 군축과 평화	67
가. 군축과 신뢰구축	67
나. 군축: 신뢰의 전제조건	74
다. 북한 군축론	79
3. 한반도 평화지대화 및 탈군사화	82
V. 평화문화 형성방안	88
1. 평화연구	89
가. 전쟁과 평화연구	89
나. 평화연구의 패러다임	93
다. 상생(symbiosis): 갈등 전환 및 해소	97
2. 평화정책	108
3. 평화운동	112
VI. 결 론	119
참고문헌	123

I. 서론

1. 문제제기

21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될 것인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평화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단지 반세기 이상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인류사의 낙관적 전망과 희망을 찾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분쟁, 내전 등의 폭력적 갈등 양상을 근절시킬 수 있는 보편적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자는데 있다. 역사가 반드시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1세기는 많은 불안정성을 안은 채 개막되었다. 이미 국가간·민족간·인종간·종족간의 침략, 혁명, 테러 등은 앞으로 수없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술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언뜻 평화를 생각할 때, 거의 동시에 전쟁을 떠올린다. 전쟁 없는 평화의 관념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평화와 전쟁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인류 문명의 야누스적 측면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전쟁은 인류 문명의 통상적인 상태인가?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평화의 시기는 극히 짧았고, 그것마저도 새로운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에 지나지 않았다. 전쟁이 시간을 관통하는 항구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평화는 소극적인 정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평화는

2 한국사회 평화 문화 형성방안 연구

비록 인류의 간절한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들 사이의 휴전에 불과했다. 일찍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갈파했듯이, “이 세상에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평화라는 이름아래 전쟁을 수행해”왔다.¹⁾ 야만스런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지금도 충분한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더욱이 평화를 바라거나 적어도 평화의 연구 자체가 평화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쳐버리기도 쉽지 않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성찰했지만, 평화의 실현 가능성 자체는 먼 지평에 설정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당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할 고통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평화를 향한 진보의 논리는 보장되지만, 평화의 실현 가능성과 희망은 역사 자체의 전개 과정 속에서 해명될 문제이다.

근대적 국가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쟁은 근대국가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손쉽게 선택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으로 정의를 내린 이래, 전쟁 그 자체는 절대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더욱이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죄악시하지도 않았으며, 근대적 의식 속에는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최후의 수단을 통해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된 상대방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사회를 최종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내재해 있었다. 이를테면 숭고한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당성은 크게 문제될 수 없었다. 막연한 도덕적 기

1)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 William Chase Green(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vol. 7, pp. 163, 165.

준에 의해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으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분류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20세기 인류는 반세기 가까이 핵전쟁의 위협아래 실로 위태롭고 공포스런 균형 즉,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전 상태를 경험했다. 냉전 시기의 평화는 레이몽 아롱의 표현에 따르면, 그야말로 ‘공포의 평화’였다.²⁾ 그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냉전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공포의 균형에 기반한 전쟁 억지론 속에서 아직도 ‘무장평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투쟁이 비록 전쟁 보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평화는 결코 한갓 유도피아적인 몽상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달리 외부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전쟁은 그 자체가 엄청난 파괴를 동반하며, 역설적으로 우리의 공포와 공포에 질린 무분별 조차 없애 버렸다는 점에서 전쟁의 회피와 평화에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³⁾

평화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들이 남·여성, 흑·백·황인종, 유교·불교·기독교·이슬람·유대교 중 어디에 속하든 상관없이, 평화는 우리들 마음속에 인류애가 재립하는 것이다. 평화는 서로 협력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우리가 전쟁과 평화관을 변화시키고, 최소한 평화

2) Raymond Aro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rans. Richard Howard and Annette Baker Fox(Frederick A. Praeger, Inc., 1967), pp. 637~43.

3) Janine chanteur, trans., by Shirley Ann Weisz, *From War to Peace* (Westview Press, 1992), Preface x-xi.

4 한국사회 평화 문화 형성방안 연구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간 심성의 회복과 민주적 사회질서의 형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론적 차원에서의 평화 연구와 실천적 차원에서의 평화운동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평화는 국가들 사이에서건 시민사회 내에서건 간에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윤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의 힘’을 통해서만 평화의 견고한 토대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의 일생을 보낸 백범 김구 선생은 계급혁명, 양차 세계대전, 침략국가의 패망 등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참된 평화에의 갈망을 ‘평화의 문화’를 통해 찾고자 했다. 해방과 분단의 와중에서, 그는 1947년 11월에 발표한 「나의 소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⁴⁾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 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고 하지 말라. 일찍 아무도 한 자가 없길래 우리가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4) 김구, 「白凡逸志」(교문사, 1980), p. 283.

‘평화의 문화’는 일견 강대국의 압제와 피침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아온 약소민족의 도덕적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다. 더욱이 김구의 평화에의 호소는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막아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침략과 압제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약자의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평화에의 민족적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김구의 이상과 소망은, 오히려 엄청난 전쟁의 참화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대결의 역사를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2. 연구방법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평화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한국전쟁은 550만의 인명피해를 낳은 전대미문의 민족사의 대참사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었다. 평화협정을 통한 전쟁 상태의 완전한 종식을 이끌어내지 못한 남북한 대치상황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온 긴장과 대결구조를 극복하고, 이제 평화구축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한국전쟁은 해방후 근대국가 수립을 둘러싼 민족내적 갈등요인이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중첩적으로 투영된 내홍적(內訌的) 국제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과 민족내적 증오감은 오늘날까지도 민족의 참된 화해의 길을 가로막고 민족사의 진운을 어둡게 하고 있다. 평화의 싹을 틔우고자 하는 소망은 미몽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민족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평화를 위한 남북한 당국의 노력과 7천만 한겨레의 슬기와 집약적 의지에 따라 한민족의 미래가 개척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의 고양과 더불어 전지구적 차원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사적 과업이 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주창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관에 매몰되었던 한민족의 피동(被動)의 역사를 청산하고 국제사회에서 평등과 상호존중의 이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선 원한, 보복, 대립을 반복해온 상투적인 진자운동의 관행을 종식시키야 하며, 우리 모두 위세대로 부터 물려받은 불신과 증오심을 극복할 수 있

어야만 비로소 평화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와 안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우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없다. 평화로운 환경 즉, 직접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평화 환경의 조성 자체가 중요하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대외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광범한 ‘평화마인드’의 확산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대결구조의 왜곡된 심성의 파악과 더불어 그에 접목된 평화의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의 문제 영역은 크게 평화이론, 평화정책, 평화운동의 세 범주로 구성된다. 평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탐구 즉, 평화연구(peace research)는 평화정책(peace policy)의 준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실천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평화운동(peace movement)의 인식론적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평화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연구 그 자체는 평화운동의 실천적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평화연구 접근의 첫걸음으로 먼저 평화와 관련된 안보 개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 시대에 부응한 안보 연구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안보의 연구는 국가 및 군사력 중심적인 관점에 입각하고 있었다면, 탈냉전시대의 평화와 새로운 안보론은 전통적 안보론의 협애한 시각을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 평화를 위한 안보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해 보았다.

첫째, 변화된 세계 속에서 ‘안보를 통한 평화’의 논리 보다는 ‘평화를 통한 안보’의 확립이 보다 현실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군비강화 또는 남북한 안보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질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과 어떤 함수관계를 갖는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군축의 당위성과 함께 군축이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정책적 선택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평화운동의 방향과 실천적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평화연구가 아카데미 영역에서 탐구될 수 있는 과제라면 평화운동은 시민사회의 역할로 특히, 다양한 NGOs의 활동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정치의 또다른 형태라는 것이 근대의 한 특징이기도 하다. 전쟁과 정치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다. 전쟁의 군사부문과 정치의 민간부문은 언제라도 호환 가능하다. 즉 군사주의의 위험 또는 ‘전쟁이라는 종교’는 민간부문을 복종시키려는 군사부문의 요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부문으로 너무도 쉽게 변화하는 민간부문의 자발성에서도 나온다. 엄격한 평화교육이 요청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역할과 과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 평화문화 : 평화를 위한 과제

1. 평화문화의 성격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가치와 규범으로부터 규정받는다.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은 그가 속한 사회의 집단적 행위양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집단적 인간들의 행위는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전쟁도 문화적 산물이다.⁵⁾ 따라서 평화가 인간 집단의 행위양식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평화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최근 평화 관련 유엔 기구들의 기본적 시각에 반영되고 있다.

유엔 총회는 1997년에 2000년을 세계 평화문화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Culture of Peace)로 선포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2001년부터 2010까지 10년을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으로 정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기초하여 발표(2000년 3월 4일)한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Manifesto 2000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은 세계 평화문화의 해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세계 사람들

5) 이리에 아키라(入江 昭) 지음/이종국·조진구 옮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서울: 을유문화사, 1999), pp. 11~19.

의 의식개혁운동을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⁶⁾

‘평화문화’는 1989년 코뜨디부아르(Cote d’Ivoire)의 야무수크로(Yamoussoukro)에서 탄생되어 1995년 UNESCO의 공식사업으로 채택되었고 이제는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당시 『인간의 마음에 깃들인 평화에 관한 야무수크로 선언』을 통해 ‘평화 프로그램’(Programme for Peace)을 마련하였다. 이 회의에는 국가,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전세계의 과학, 교육, 문화적 공동체와 모든 개개인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⁷⁾

- (a) 생명, 자유, 정의, 연대, 관용, 인권 및 남녀평등 등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문화를 개발함으로써 평화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 (b) 인간관계에서의 정의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확보해주는 공동정책의 수행을 심화시키기 위해 인류의 공동 운명체로서의 인식을 강화해야 하며;
- (c)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영구적 특성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포함시켜야 하며;
- (d) 환경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어느 한 국가의 권위나 통제하에 수행된 활동이 다른 국가 환경의 질을 해치지 않고 나아가 생물권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에서의 일치된 행동을 고무해야 한다.

6) ‘Manifesto 2000’ <http://www.unesco.or.kr>

7) <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en>, <http://unesdoc.unesco.org/ulis/ged.html>.

평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국가 상호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평화에 관한 ‘야무수크로 선언’은 인간 심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평화에의 접근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다. 이를테면 법·제도적 마인드로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어야 한다는 평화마인드와 평화학의 심인적(心因的) 접근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평화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함축한 이른바 ‘평화문화’(a peace culture)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후 유엔의 ‘세계 평화문화의 해’ 채택 등을 계기로 평화문화라는 말은 최근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유엔은 평화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유엔이 정의한 ‘평화문화’는 살아 움직이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일상 생활 가운데서의 인권 존중을 의미하며, 평화, 발전, 민주주의라는 세 요소의 상호 작용이 만들어내는 힘이다. 삶의 문화로서 평화문화는 서로 다른 개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서로 나누고 경청하며 보살피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빈곤과 배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평화문화는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공평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⁸⁾ 이를테면 평화문화가 추구하는 목적은 전쟁, 폭력, 기만, 차별의 문화를 비폭력, 대화, 관용, 연대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Manifesto 2000’ <http://www.unesco.or.kr>

평화문화는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갈등적인 문화적 요소를 인간 심성의 개발을 통해 상호 수평적이고 협조적인 문화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평화문화는 ‘억압받지 않는 의사소통’⁹⁾에 기반한 신뢰, 평등, 그리고 이성과 자유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 태도와 정향이다. 평화문화는 성찰적 태도, 감정이입적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려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를테면 평화문화는 상대방 존재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한편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대화의 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대화는 상대방의 가치와 열망을 이해하고, 문제를 규명하며 새로운 행동규범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윤리적 규칙을 정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나아가 평화문화는 단일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개별 문화를 초월하고 또 그것들을 포괄하는 문화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승인이 평화 개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유네스코와 유엔의 평화문화의 선언은 매우 규범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각자의 현실에서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실천적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9) 이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사회비판이론의 가능영역이다. J. Habermas·홍기수 옮김, 『정치문화 현실과 의사소통적 사회비판이론』, (서울: 문예마당, 1996) 참고.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백운선 옮기고 씀,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 - 유엔과 유네스코의 평화선언 자료집』 (서울: 오름, 1995), p. 18.

된다. 전쟁과 평화는 국제관계상의 현실임과 동시에 국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특정 국가의 사회문화적 움직임이나 혹은 개개인의 심리 상태 등은 평화의 내적 조건들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폭력적 갈등을 유발하는 ‘전쟁문화’를 해소하고 평화지향적인 문화를 창출하고 개발하는 일은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평화문화는 물질적 가치의 우위 속에서 왜곡되어온 근대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 정신의 보다 깊은 ‘내면 세계의 르네상스’¹¹⁾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연구의 실천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11) Acham Sulak Sivaraksa, “Buddism and A Culture of Peace,” ed. by David W. Chappell, *Buddhist Peace Work: Creating Cultures of Peace* (Boston: Wisdom Publications, 1999), pp. 29~46.

2. 평화문화의 창출

가. 전쟁문화의 극복

평화문화는 전쟁문화가 사라지는 곳에서 싹튼다. 평화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전쟁을 유발시켜왔던 문화적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전쟁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갈등 논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전쟁문화’(war culture)는 최근 19세기 나폴레옹 시대 이후 20세기까지 유럽에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전쟁 사례를 연구한 J. 바스케즈에 의해 발견된 독특한 개념이다.¹²⁾ 그는 전쟁문화는 본질적으로 유럽적 경험에서 유래한 것으로, 특히 냉전시대의 행위원리로 금과옥조처럼 여겨졌던, 일방의 이익은 반드시 타방의 손실인, 이른바 제로-섬 공리에 집약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로-섬 명제는 두루 아다시피, ‘적’을 비합법적·비인간적 존재로 부각시켜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중재조차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제로-섬은, 통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이미 대립적인 반명제만을 낳았던 전쟁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¹³⁾

게임이론,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법 등은 원래 이익최적화 수

12) John A. Vasquez, *The War Puzzle* (Cambridge: CPU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1993).

13) Carl G. Jacobson, *Peacemaking as Realpolitik, Conflict Resolution and Oxymoron: the Record; the Challenge*, Johan Galtung and Carl G. Jacobson, *Searching for Peace* (London·Sterling, VA.: Pluto Press, 2000), p. 3.

단으로 개발되었으나, 아주 효과적인 도구마로 ‘전쟁문화’의 부속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점차 세련되고 발전됨으로써 마치 전쟁문화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달리 ‘수인(囚人)의 딜레마’ 게임은, 장기간에 걸친 상호관련적 조건 아래서, 상호이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된다면, 양측 모두 제로-섬적인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더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방위연구소들이 거의 무시해왔던 이 통찰은, 수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때때로 전통적인 전략연구소, 국가안보 및 갈등 연구소 등 수많은 연구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진지한 학제적 연구로서의 ‘평화연구’의 중심적 논리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유엔 팔메위원회(UN Palme Commission)가 제기한 ‘상호안보’와 ‘공동안보’ 개념은 이러한 이론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선을 그었다.¹⁴⁾ 여기에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세계평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전쟁문화에 큰 충격을 가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문화는 해소 불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전쟁문화는 현실정책의 일환인 안보 관련 대책들로, 일반적으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그것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문화이다. 이러한 전쟁문화는 최근 세 방면에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¹⁵⁾

14) Olof Palme: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Common Security: A Blueprint for Surviva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15) Carl G. Jacobso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on, "Our War Culture's Defining Parameters: Their Essence; Their Ramifications," Johan Galtung and Carl G. Jacobson, 앞의 책, p. 26.

첫째, 1960년대 이래의 개발된 게임이론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게임이론의 핵심적 메시지는, 수학적으로 나타나는 수인의 딜레마 이론을 통해 극적으로 부각되지만,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연대의식에 기반한 선택이야말로 게임에 임하는 양측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게임이론의 이론적 정교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게임이론을 ‘이기고 지는’ 승부관으로만 바라보는 논리를 극복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게임 참여자 모두의 승리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갈등유발적 논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신념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군비경쟁이나 군비통제 등과 같은 케케묵은 문구들을 일거에 날려버린 고르바초프의 놀랄만한 신사고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마침내 제로-섬이라는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과감히 끊어버렸고, 상호안보와 공동안보의 개념을 제안했던 것이다.

셋째, 최근 국가중심적 안보론이나 지금까지 별다른 회의없이 수용되어 왔던 갈등 해결 방안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향과 현상적인 도전들은 비록 전쟁문화의 대안적인 구성요소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평화문화’의 출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안보 개념의 전환

21세기를 맞이하여 안보 개념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 안보와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등에 초점을 둔 전통적 안보 개념은 세계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부응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환경재앙으로부터 인권, 개인 및 공동체적 자유, 그리고 내전 양상을 띤 폭력의 증폭 등으로 인한 새로운 안보 이슈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안보’ 이슈라고 할 만한 것도 아주 다양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지만,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호소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반세기 동안이나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데 유용한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그러한 인식틀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안보 개념의 확산과 외연 즉, 공동체안보, 개인안보, 환경안보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안보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연구의 관심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¹⁶⁾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안보에 대한 이해는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냉전시대의 안보론의 실패 요인은 이분법적 논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 인가/아닌가’라는 논리로서, 이를테면 ‘안보냐/안보위기가냐,’ ‘(적보다) 강한가/약한가,’ ‘선인가/악인가’ 라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의

16) Kai Frithjof Brand-Jacobson, with Carl G. Jacobson, “Beyond Security: New Approach, New Perspectives, New Actors,” Johan Galtung and Carl G. Jacobson, 앞의 책, pp. 268~70.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가/아닌가’의 상충적 이분법을 뛰어넘어 ‘그리고/함께’의 상보적 관계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일방의 안보는 타방의 안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논리 자체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한다. 더욱이 안보라고 하면 전적으로 군사 안보로만 인식되었던 것을 이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생태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¹⁷⁾ 따라서 국가간 및 국내정치적 관련 속에서 파악해온 전통적 안보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안적 안보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

대안적 안보 개념은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을 탈피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전망의 모색을 시도한 데에서 비롯된다. 이는 첫째, 누구/무엇으로부터의 안보인가? 둘째, 누구/무엇에 의한 안보인가? 셋째, 누구/무엇을 위한 안보인가? 라는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되고 있다.¹⁸⁾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국제관계론이나 안보연구는 국가간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의 사용이나 위협에 의한 침략과 침략 위협의 형태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안보 위협, 예컨대 불평등과 착취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기인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나, 또는 갈등 해결의 수단

17) Barry Buzan·Ole Wever·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pp. 1~8.

18) 예컨대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린이에게 있어서의 어머니의 간호와, 주식투자자나 마피아 두목이 인식하는 안보·안보불안 문제는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안보는 다양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다. Kai Frithjof Brand-Jacobson, with Carl G. Jacobson, 앞의 글, Johan Galtung and Carl G. Jacobson, 앞의 책, p. 269.

으로 용인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문화 등의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대개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만을 문제 삼았던 데에 있다. 세계를 대립적인 두 블록으로 나뉘 놓고, 흑/백, 선/악, 승리/패배 등의 제로-섬적 사고와 함께 전사회의 군사화 등을 통해 안보를 추구했지만, 안보를 증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경쟁적이고 갈등유발적인 사고와 더불어 오히려 안보 불안만 증대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국은 엄청난 군비지출, 전사회의 군사화로 치닫게 되었다.

한편 안보 산업 자체가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안보를 오직 힘에 기반한 군사적 측면에서만 이해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엘리트의 독점적 통제와 군비확장, 군사기술, 군사동맹 등을 주장하는 전략가들이나 기획가들만 판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안보’는 일반 국민들과는 무관한 전문가들의 관심영역으로 국한되며, 안보전문가들의 선택과 결정이 국가의 안보 불안을 한층 악화시키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더라도 그들의 실패는 언제나 잊혀지고 만다.¹⁹⁾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 과정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와 엘리트에게 맡겨졌던 안보 이슈의 결정 과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어느 한쪽의 안보는 다른 쪽의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는 인식은 국가의 방위력의 증강 자체가 상대국을 불안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방

19) 1993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몇 해 동안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어느 면에서 국제관계론과 안보전문가들에 의해 증폭된 위기상황이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위력 증강이라는 명분아래 군비경쟁을 초래하여 양국 사이에 갈등과 불안의 근원인 안보 불안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사실은 냉전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방위력 강화·군비증강의 악순환 관계를 통해 충분히 예증되고 있다.

평화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보 개념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는 ‘전통적’ 안보 개념은 ‘(…)에 대한’(against) 안보이거나, ‘(…)로부터의’(from) 안보로 인식되었다. 이 경우 안보는 상호간 조화 보다는 대결적 관념을 전제한 흡스적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ad omnes)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즉, 나의 안보는 타인의 안보를 약화시킴으로서 보장될 수 있다는 안보관이다. 이러한 안보관은 앞에서 언급한 유엔 팔메위원회 의 ‘공동안보’ 또는 ‘상호안보’의 개념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일방적인 군축선언 및 철군 등은 자기 중심적 안보 개념으로부터 보다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다른 나라로부터의 외래적인 것, 즉 타국민, 외래문화, 그리고 자연 재해 등으로부터 위협에 대한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안보의 의미는 여전히 막중하다. 그러나 ‘상생적’(for and together) 안보가 아닌 전통적인 대결적 안보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안보 개념이다. 비록 상호적 및 공동적 안보가 이러한 경향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 개념도 아직 구태의연한 안보 패러다임의 지배적 구

조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안적 안보 개념은 물론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안보 개념이다. 이를테면 인간 심성에 와닿는 ‘협력’의 개념이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²⁰⁾, 그리고 안보 불안과 위협을 초래하는 구조의 적극적인 변형 등은 대안적 모색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 어느 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도 모두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 발생의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대안 모색을 위한 우리의 창의성과 상상력의 부족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가안보 중심의 국제관계론은 정보 통제와 정책결정력에 대한 엘리트의 지배적 역할을 강화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이제 새로운 안보는 일반 대중과 그리고 환경 문제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월적·배타적 지배로부터 타방을 배려하고 함께 하는 협력적 안보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역할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 연구에 있어서 국가의 성격과 위상 그 자체에 대해 보다 새로운 인식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국가중심적 모델을 통해 강화되어온 사회와 안보의 전통적 개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안보 개념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성이 요망된다.

20) 전쟁의 대의는 항상 ‘평화를 위한 전쟁’이었다. 평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평화 추구의 과정도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요한 갈통에 의해 주장된 이래 평화연구의 공리로 인식되고 있다.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PRIO: Sage Publication, 1996) 참조.

III. 평화의 역설 : 세력균형과 안보

평화와 안보를 결합시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친숙한 일이다. 근대 국가의 대두와 더불어 안보는 최고의 국가적 목표로 승인되었다. 여기서는 정치적 지배의 확보와 시민들의 안보가 국가목표의 중심으로 나타났다. 홉스는 일찍이 시민들의 안보는 모든 정치적 지배의 결정적인 합법성이 근거가 된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 사실 인간들은 자기들의 삶의 곤궁과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때 안전을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 D. Roosevelt)는 의회연설에서 ‘사회안보’(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을 사회정책의 중심개념으로 설정했다. 사회안보는 당시 물질적 곤궁상태의 극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는 달리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1948)이 제정된 이래로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개념이 대외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외부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안보는 일반적으로 곤궁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치적 안보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안보는 국가적 권력독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동적 삶의 보장과 낮은 세력으로부터의 국가의 보호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정치적 안보는 ‘내적’ 및 ‘외적’ 안보의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안보는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범주에서 이해된다면, 그 안에서 ‘군사적 안보’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정치적 안보의 목표에서만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안보정책의 조치들의 필연성과 합법

성에 관한 결단의 준거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평화와 관련하여 세력균형론과 국가안보 등의 논리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력균형과 평화

가. 세력균형: 불안한 평화

칸트는 평화에 관한 그의 주저 『영구평화론』(1795)를 발표하기 직전 평화에 대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을 띠는 소책자(『잠언(箴言): 이론적으로는 옳을 수 있으나, 실천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1793)에서 당대의 평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소책자에서 그는 평화에 대한 참된 이론은 세 가지 영역들에서 모두 타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도덕 일반, 국가의 법, 그리고 국제법 등의 세 차원의 실천에서 타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시의 이른바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을 주장하는 논리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²¹⁾

인간의 본성은 전체 민족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보다 결코 덜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독립이나 자신의 재산에 관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 서로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침해하려는 의지는 언제나 존재하나, 종종 전쟁보다도 평화를 더욱 압제적인 상태로 만들고 국내적 복지를 파괴하는 국방을 위한 무력증강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일하고 가능한 구제책은 모든 국가들이 복종해야 할

21) Immanuel Kant, translated by Ted Humphrey, “On the Proverb: That May be True in Theory But Is of No Practical Use(1793)”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3), p. 89.

힘에 기반한 공적 법률체계 즉, 국제법(개개인의 시민적 또는 국가적 법에 상응하는)체제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이라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평화는 마치 ‘스위프트의 집’처럼 창을 한 번 던지면 즉시 깨어질 순전한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칸트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 진보에 대한 물음은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와 같은 살벌한 영역에서는 결코 제기될 수 없다. 이미 그는 무기의 증강들이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팽배한 상황에 부딪혔던 것이다. 그러한 시대에 칸트가 세력균형에 기반한 평화론의 한계를 - 그러나 칸트 이후 국제정치학에서의 전쟁 억제와 평화론은 모두 이 세력균형론의 합리성을 금과옥조로 믿고 적용했던 데에 비해 - 이처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는 이미 세력균형론은 상대국에 대한 지배와 우위 확보의 충동으로 인해 국가간 폭력의 불가피성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세력균형론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군사적 위협을 통한 평화의 추구는 결코 평화를 확보할 수 없고 단지 휴전 상태를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칸트에게 있어서 평화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휴전 즉, 전쟁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평화는 “모든 적대행위의 종식”²²⁾을 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력균형’ 즉, 무력 위협을 동반한 균형은 평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22) Immanuel Kant, *To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1795), 앞의 책, p. 107.

나. 세력균형론의 모순

정치적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세력균형론을 강조한 H. 모겐소는, 세력균형은 다원적 사회의 영구적 요소이고, 비교적 안정되고 평화적 갈등이 있는 곳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관계에서 역사의 특정 시점에 형성되어 있는 세력관계의 '현상'(Status Quo)을 변화시키고자 할 경우, 세력균형으로 이루어진 평화 상태는 깨어지고 만다. 세력균형론의 역사적 사례 적용에 대한 모겐소의 안목이 특히 한반도의 사례에 착안한 점이 무척 흥미롭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을 지배하는 어느 우월한 한 나라, 혹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서 경쟁을 하는 두 나라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주장한다.²³⁾ 즉, 한국이 거의 2천여년 이상을 독립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극동지역에서의 세력균형에 힘입은 결과였다는 것이다. 강력한 한 세력이 한국을 지배하고 보호하거나 한반도가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쟁 장소가 될 경우,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대단히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곤 하였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중국의 지배력 회복의 의도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의 관계에서 양국은 비록 애매하고 불안정하지만 한국을 두 개의 세력권으로 분할시켜 두는 데 만족하게 되었는데, 이는 극동에서의 세력균형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²⁴⁾

23) 한스 J. 모겐소·이호재 역, 『현대국제정치론(Politics among Nations-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서울: 법문사 1987), pp. 240~41.

우리는 국가의 독립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의 역학구조 특히, 주변국들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여겨왔으며, 세력균형의 유지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현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인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역학관계의 항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경험은 더욱 세력균형론의 타당성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물론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에 휩쓸려들지 않고 국가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로,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의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는 국가가 아니기에,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와 힘의 변화를 잘 살펴 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세력균형론은 남북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틀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욱이 남북한 관계의 세력균형론의 강조는 항상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 논리로 귀착되면서 상호불신에 기반한 갈등과 대결의 긴장관계를 부추기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세력균형론이 마치 전쟁 억제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남북한 세력균형론에 기반한 평화 유지의 신념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우위를 전제로 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평화의 문화를 창출해 가는 과정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

24) 한스 J. 모겐소, 앞의 책, p. 551~53.

식할 필요가 있다.

세력균형론에 함축된 몇 가지 특징은, 모겐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세력균형은 여러 독립적 단위로 구성된 모든 국제사회가 그 구성원의 독립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 사회법칙의 한 특별한 표현형태라는 점이다. 둘째, 세력균형과 그 보존을 위한 정책은 불가피한 정책일 뿐 아니라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정적 요소로 주장된다. 셋째, 국제적 세력균형의 불안정성은 그 원칙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사회에서 그 원칙이 적용되는 그 특별한 상황조건에 기인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세력균형의 기능은 물론 국가간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세력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균형은 불안정하며, 따라서 국가의 독립이나 평화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세력균형의 여러 방법으로는 분할·통치, 보상, 군비경쟁, 동맹 등이 있다. 그러나 세력균형 그 자체는 불안정성, 비현실성, 부적합성의 한계를 안고 있다.²⁵⁾ 이런 점에서 세력균형이 항상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력균형론의 불확실성: 동맹으로 구성된 어느 세력균형체제에나 본질적으로 내재한 격심한 불확실성의 역사적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 동맹은 항상 대항동맹을 낳는다. 따라서 동맹체제에 의지한 세력균형 정책은 그러한 세력균형을 변경시키려는 또

25) 한스 J. 모겐소, 앞의 책, pp. 276~302.

다른 동맹을 낳기 때문에 동맹에 의한 세력균형 그 자체는 언제나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세력균형론의 비현실성: 국제정치의 권력투쟁적 속성에 따르면 세력균형에 참여하는 각국은 실제로 균형된 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게 유리한 우세한 권력상황을 바라고 있다. 또한 국력은 객관적인 양적 지표로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느 국가나간에 항상 평가된 권력 이상의 상태를 확보하려 든다. 최대한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각국은 권력신장 의지는 상대국가를 자극하게 되고, 상대국의 권력신장 노력은 자국을 권력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 경우 상대 경쟁국의 권력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전쟁도 불사하게 되어 세력균형에 의한 안정과 평화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된다.

세력균형은 사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거나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세력균형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대국가체제가 수립된 이래 수많은 전쟁이 대부분 세력균형의 유지 또는 회복에 근거를 두었던 것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검증되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세력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불안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점에서 세력균형론에 의한 안정과 평화 추구의 비현실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력균형론의 부적합성: 세력균형론이 근대국가체제의 안정논리로 기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럽 사회의 도덕적 일체감의 토대가 밑받침되고 있었다. 세력균형은 17, 18, 그리고 19세기에 걸쳐 전성기를 맞으면서 근대국가체제의 안정과 그 구성국가들의 독립 유지에 실제로 공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근대국가체제는 유럽지역의 서구문명 사회를 중심으로 성립하였다. 유럽은 전 지구상의 비서구지역을 식민지로 삼아 변영일로에 있던 하나의 커다란 공화국이자 기독교 공동체로, 평화시에는 수많은 국가들간 활발한 경쟁활동으로 지식과 산업의 진보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전시에 경우에도 유럽 열강은 서로 절제하고 치열하지 않은 경쟁을 해왔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 각국은 그들 사이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실제 체제는 끊임없는 동요 속에서도 전복됨이 없이 유럽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바로 그 정도의 단결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공화국’, ‘크리스트교 군주들의 연합체’, 또는 ‘유럽이라는 정치체제’ 등의 관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가운데, 세력균형론은 유럽의 지성적·도덕적 기반의 전통에 접맥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유럽사회의 이러한 근대국가체제의 도덕적 일체감의 유산이 오늘날에도 전지구적 차원에서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또는 20세기 중반이래 반세기 동안의 냉전체제에 의한 국제질서를 세력균형론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다소간 논쟁적인 문제임은 틀림없으나,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세력균형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일체감의 새로운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유럽적인 도덕적·정치적 일체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정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력균형론의 부적합성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관계에서 세력균형론은 세력균형 그 자체의 객관적 지표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서로 자기 측의 ‘힘’이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전제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국방력 중심의 안보 논리의 강화를 가져오고, 이는 역으로 상대방의 불신과 우려를 자극하여 결국 대결과 경쟁의 악순환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의 논리로 강조된 세력균형론의 반평화적 긴장유발적인 패러독스를 만나게 된다.

2. 안보와 평화

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주권국가들의 독립을 전제로 상호 자주성의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관철될 때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고 안정된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와는 달리, 도덕적·규범적 가치기준이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신뢰할 만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 자기존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가안보를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이처럼 국가이익과 국

가안보는 불가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국가이익을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다룬다. 국가이익은 한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욕구와 갈망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 국가이익은 자국의 존망의 문제로부터 미래 이익의 보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익의 우선 순위를 ‘사활적 이익’(survival interest),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 ‘중요이익’(major interest), 및 ‘부수이익’(peripheral interest)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²⁶⁾ 여기서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인 ‘사활적 이익’은 독립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타국에 의해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당한 경우나 명백한 적대행위가 발생한 때의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국가총동원령 즉, 전쟁 선포의 불가피한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명백한 국가 존망의 상황만이 평화를 깨뜨리고 무력충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이익’이나 ‘부수이익’을 위해서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는 대개 세계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패권국가의 공세적 대외정책의 형태에서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1991년의 미국과 이라크와의 걸프전쟁은 미국의 국가 존망이 걸린 ‘사활적 이익’이나 세계지배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핵심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지만 미국은 전쟁이라는 대외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국익과 관련된 최종적 정책결정인 전쟁은

26) Donald E. Nuechterlein,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A Time for New Approach,” *ORBIS* (Spring 1979), p. 85.

국가이익 분류에 의한 하위 순위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전쟁사는 대개의 경우 미국 국익과 국가안보와의 상관성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정합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현실주의의 특성은 국가이익을 종종 국가안보 또는 군사력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는 데에 있다. 더욱이 국가안보를 군사력 증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군사력 중심주의의 안목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국가이익의 관점을 가장 뚜렷하게 부각시킨 경우는 모겐소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한 국가의 영토와 제도 및 문화의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의 생존’이 최소한의 국가이익이며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이익의 세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의 개념이 국가정책의 최선의 기준이자 이해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⁷⁾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대개 국가의 안전과 생존은 그 국가가 지닌 힘에 의하여 유지된다는 주장과 함께, 개인의 행동과 국가정책 추진 방향을 구분하는 이중구조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이익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정치적 현실주의의 입장은 국가안보 그 자체의 추구에 있어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정치적 현실주의는 대외정책의 정책적 일

27) Hans J. Morgenthau, “Ano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s Review* (December 1952), p. 73.

관성을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으나, 힘에 기반한 지나친 국가안보의 추구는 자기파멸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 중심적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미래지향적이고 인류 공동의 포괄적인 이익을 바라볼 없는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또한 국가에 대한 인간의 편협된 충성심 등은 우방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등한시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이익은 도덕적 원칙과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이다. 국제정치학 이론의 일대 전환점을 가져온 현실주의 이론가인 모겐소는 일찍이 그의 저서(*Politics Among Nations*, 1948년)에 부친 부제 ‘권력과 평화를 위한 투쟁(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에서 상징되듯이 국제정치 자체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제일차적 목표는 항상 권력이다”²⁸⁾고 역설하면서, 이 사실은 국제문제의 관례상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흔히 학자와 정치평론가, 심지어 정치가들마저 이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권력투쟁론에 입각한 국제정치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대미문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 이론에서 제1차 대전 이후의 이상주의적 접근법의 전통에 안주하고 있던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다. 당시만 해도 권력정치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권력투쟁 그 자체를 국제정치의 보편적 원리를 규정한 모겐소의 논의는 많은

28) 한스 J. 모겐소, 앞의 책, p. 35.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권력정치라는 용어는 인류가 문명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나 세계정부가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할 사악함을 한 마디로 압축시켜 놓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겐소가 국제도덕, 윤리와 관습 그리고 법의 역할마저도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은 도덕적 원칙과 국가이익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현실을 도외시한 도덕적 원칙과 정치적 현실에서 비롯된 또 다른 도덕적 원칙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모겐소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행위원리는 권력투쟁을 통한 권력의 획득·유지·확대를 국가목표로 삼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했지만, 권력 혹은 국가이익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냉전시대 이래 지금까지 미국의 대외정책 부문에서나 국제정치학계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익의 신성불가침성을 회의하거나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정치가나 학자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우리와 같은 고등생물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권력정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제적 지도자나 정치이론의 적극적인 등장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자국의 국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거나 반대로 이를 경시하는 경향은 양자 모두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자국의 국익과 상대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균형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유지의 필요조건이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국제관계에서 규범적 가치의 의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도덕·윤리의 국제

정치적 규정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 상대국의 이익과의 조화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고, 상충적 이익은 평화적 경쟁과 타협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정과 평화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정치적 이상주의의 덕목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국가이익의 개념은 정치적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²⁹⁾

그렇다면 국가안보란 과연 무엇인가? 국가안보란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안보가 특히 강조되면서, 국가안보는 주로 국경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³⁰⁾ 국가안보 정책은 “현존하고 있고 또 잠재적인 적에 대항하여 중요한 국가적 제가치와 그것들의 확장에 유리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조건들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³¹⁾ 안보정책은 국가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삼아, 이를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을 가동하며 군사력의

29) Reinhold Niebuhr,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 (New York: Scribner's, 1953), pp. 134~37.

30) Joseph S. Nye and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12, No. 4 (Spring 1988), pp. 5~27.

31) Frank N. Trager and F. N. Simoni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in F. N. Trager and P. S. Kronenberg(eds.), *National Security and American Society*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1973), p. 36.

가장 효율적인 동원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럼에도 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안보 개념의 모호성>

국가안보는 근대국가체제가 성립된 이래 국가존립의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국가안보 문제는 국가 존망의 문제로 오래동안 국제정치학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연구되어 왔으나, 과연 국가안보가 무엇이나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호한 상징’³²⁾이라는 점에서 안보 문제는 많은 논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안보 개념에 대해 최근 멘델은, 일반적으로 국가정부의 책임으로써 국가 및 시민의 핵심적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³³⁾ 여기서 ‘핵심적’ 가치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으나 국민 차원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라면 국가 차원에서는 생존, 번영, 국가적 위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핵심적 가치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합치된 견해를

32) Arnold Wolfers, “National Security as Ambiguous Symbo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December 1952), pp. 481~502;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p. 147.

33) Robert Mandel, *The Ch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 A Conceptual Analysi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4), p. 21.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안보 개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안보 그 자체의 주관적 속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안보 개념은 그 자체의 모호성에다 국가가 처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³⁴⁾

<국가안보의 상충성>

국가안보는 광범한 의미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특정 국가의 국익을 위한 국가안보전략과, 경쟁국의 국익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전략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대개 국제사회에서 국익 수호를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대외정책은 모든 국가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그것의 타당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최근 미 백안관에서 발표한 미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전략을 살펴보자.

미국은 기회를 포착하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현실에 맞춘 국가안보전략의 세 핵심을 안보의 제고, 미국의 경제적 번영의 증진 및 해외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NATO와 같은 군사동맹의 팽창 및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Partnership for Peace)와 같은 폭넓은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⁵⁾ 이러한 전제에서 미

34) Arnold Wolfers, 앞의 책, p. 150.

국의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 가운데, ‘국내와 해외에서의 안보 제고’를 위해 미국 국익에 대한 위협들의 내용과 성격들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접근방식으로 주목되는 점은 미국의 국내 안보를 위해 해외를 선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⁵⁾ 물론 미국의 국제사회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 토대 위에서 공동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서방사회 국가들의 대외정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세계적 추세를 거역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이 다른 여타 국가들의 국익과 조화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배치·대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의 국익을 위한 국가안보는 오히려 경쟁국가나 동맹관계의 반대 쪽 국가의 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위협적일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국익 중심의 국가안보 논리는 개별국가의 존립을 위한 제일차적인 목표가치임은 분명하지만 경쟁과 대립구조가 상존하는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안보 중심 논리는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이 국익에 기반한 국가안보 논리 중심이라면 필연적으로 국가간 상충적인 갈등관계

35) 미백악관,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1998. 10)」(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999. 봄·여름 제5권 1호), pp. 339~40.

36) 미백악관, 앞의 책, p. 341.

를 낳게 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논리와 평화추구 정책 사이의 가로놓인 딜레마를 인식하고 적절한 조화상태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 변화된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안보정책의 과제로 제기된다.

한편 오늘날 경제력의 국제화에 따른 ‘기업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안보는 새로운 형태로 국가 내의 최우선적이고 중심적인 힘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는 지상명령은 군대화 그리고 무력갈등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 정부, 산업,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복합적인 힘의 동맹관계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국가안보라는 지상명령과 그 기능의 시민사회로의 확산은 국가 지도력, 제도, 자원, 가치 등의 항구적 동원체제를 뜻하는 것으로까지 의미부여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 이 경우 국가안보는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³⁷⁾ 이에 부응하는 국가안보 시나리오는 시민사회를 왜곡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에 대한 대중적 반발을 체제전복으로 규정하게 된다. ‘적’은 국민의 내부에 있고 따라서 국민 자체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한 위협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그 본질적 위협은 항상 동일하게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국가안보와 같은 관변 이데올로기 중 가장 낮은 형태는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이지만 그 겉모습은 상황에 따라 제국주의의 위협,

37) Victor P. Karunan, “아시아 인권상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Forum- Asia, 1994.10.15~17, 방콕),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8-kb22.htm>.

인접국에 대한 적대성, 자민족 중심주의 혹은 단순한 과격주의, 혹은 '범죄와의 전쟁'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단순히 부패한 사회구조에 대한 민주화, 개혁을 주장하거나, 권력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적'으로 규정된다"³⁸⁾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안보 및 관련법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 '반국가활동',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등의 포괄적 표현이 그렇다. 이는 보안법 시행에 있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안보는 언제나 인권 문제와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나. 국가안보와 민족안보

국가안보는 국민적·민족적 정체성에 의존한다.³⁹⁾ 이러한 정체성은 두 측면에서 이해된다. 우선 내적 단합은 외부의 위협에 대해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정체성은 흔히 애국심 또는 민족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적 단결이 인종, 종교, 언어 등의 다양한 차별적 요소에 기반한 경우는 오히려 평화와 안정에 위협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냉전체제의

38) 조용환, "국가보안인가, 국민보안인가?: 인권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안," 『아시아 국가보안법하의 인권 침해』(KONUCH, SEOUL 1993), p. 96.

39) Paul A. Kowert, "National Identity: Inside and Out," *The Origins of National Interests, Security Studies* Vol. 8 Numbers 2/3 Winter 1998/99-Spring 1999.

붕괴에 따른 국제정치적 힘의 공백상태에서 발생한 민족분쟁의 엄청난 참상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였다. 정체성의 또다른 특징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적과 우방은 유동적이며 결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민족적·국민적 정체성은 고정불변적인 뚜렷한 형태를 지니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국내정치의 민주화 수준 등과의 관련 속에서 21세기 국가안보는 새로운 성격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분단민족인 우리의 경우 국가안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적 안녕의 문제가 최우선적인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한민족 전체의 민족적 생존과 번영의 과제를 아주 외면한 문제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민족안보의 이중적 전망이 요청되고 있다. 남북한 두 국가는 말하자면,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민’을 갖는 ‘결손국가’(broken state)⁴⁰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은 이러한 결손국가 상태를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안보에 앞서 결손국가 자체의 존립과 우위를 위한 군사력 중심의 안보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다.

다른 한편 우리는 후발산업화국가의 일반적 국가 모델로, 즉 국가안보를 지향하는 산업성장 모델을 적극 수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

40) 임현진·김병국·공유식, “왜 결손국가인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역사사회과학적 단상,” 아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1993. 4. 9),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 참조.

다. 민주주의 모델을 제도의 집합으로 보면 국가는 시민사회와 동등하게 안보의 수호자가 된다. 이것은 서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후발산업화국가에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국가는 외부의 침략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군사적 역량을 국내의 적과 그 국민 자신 또는 적어도 그런 영역을 탄압하는데 사용해 오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경험하였다.

아·태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국가안보는 국내적인 안보(internal security)가 되며, 발전주의적 국가(developmentalist state)의 이익에 복무하나 시민-사람의 안보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개발논리를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가기구 그 자체의 수호를 위한 ‘국가안보’는 이제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적 세계화 과정의 심화된 왜곡 과정으로, 초국적 자본의 활동과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제3세계의 국가활동으로 즉, 초국적 투자자들을 위한 ‘국가위험’(country risk) 수준의 감소를 지향하는 안보가 새로운 국가안보로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국가안보는 초국적 자본과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⁴¹⁾

한편 분단시대 국가안보는 줄곧 정권안보 논리와 일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⁴²⁾ 또한 안보논리는 군사력 중심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까지 적용됨으로써 민족 내부의 대결의식과 사회심리적 긴장의식을 일상화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심

41) 킨히테 무사코지, “국가안보 국가지대에서 인간안보 사회지대로 - 일본의 한 시각 -,” <http://www.humanrihts.or.kr/HRLibrary/HRLibrary8-kb7.html>.

42) 홍용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1953~1960,”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36집 3호 1997, 참조.

지어 안보논리·안보의식 자체를 모든 사회적 가치의 중심에 자리잡게 함으로써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지향적 심성은 반국가적·반사회적 행태로 규정되는 안보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추구했던 것이다.⁴³⁾

남북한은 이제 국가안보와 아울러 민족안보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참된 화해·협력 그리고 굳건한 평화체제의 확립이 선결과제로 떠오른다.⁴⁴⁾ 갈등과 대결의 냉전체제 아래서 남북한 각자의 적극적인 군사력 중심의 안보정책의 강화는 역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더욱 심각한 안보 불안을 낳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긴장과 적대의식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추구의 싹을 퇴위보려는 노력을 항상 무산시켜왔던 것이다.

안보의식은 집단적 정체성에 기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대적 사고의 중심축인 국가중심주의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 속에서⁴⁵⁾, 국가안보와 국민적 안보의식 등의 강조는 더 이상 소기의

43) 안보이데올로기의 내면화는 북한의 남침기도의 주기적인 확인 작업의 병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1980년대 중반 북한의 수공 침략의도로 왜곡되면서 온 국민을 긴장시켰던 ‘금강산 댐’ 해프닝은 마치 이순우화의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반복적인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긴장 유발적인 안보의식의 재확인 작업으로는 효과적인 것임이 입증되었다.

44)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가안보의 개념과 방향은 최근의 『국방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국가안보를 한 국가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 ②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공존관계의 구축, ③ 국제공조체제와 협력 강화를 토대로 국가의 안정과 번영, 발전 기반 확립의 세가지 국가안보 목표를 밝혀 놓았다. 『국방백서 1999』, 1절 국가안보와 대북정책, 참조.

45) 구영록, “국가중심주의와 평화체제,”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7), 참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인은 다양한 결사체의 멤버로서 전통적인 근대국가체제에만 귀속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 국내적·국제적 비정부기구 NGO의 활동이나 국제기구, 종교단체 등의 역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가존립을 위한 국방태세와 외침에 대한 방어능력은 한층 강화되어야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국가행위의 무비판적 수용에 연계된 안보논리·안보의식의 강화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안보를 확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평화야말로 안보의 첩경이며, 평화를 통한 안보는 국가안보와 더불어 한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민족안보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새로운 안보 개념: 인간안보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4년 변화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⁴⁶⁾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냉전 종식 후의 세계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냉전 종식 후 발생하는 분쟁의 90%는 내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이다. 아프리카

46) Dr. Mahhub Ul-Hag, *Human Development Reports* (1994 및 1998), UNDP.

의 시에라리온 내전의 비극은 반란군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팔과 다리가 잘린 수많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의 참상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마약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자기 동포에게 마구 총을 쏘아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 병정들’, 내란 지대 도처에 묻혀있는 지뢰 폭발로 날마다 희생되는 인간의 생명은 더 이상 외면될 수 없는 참극이다. 이런 비극들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고 있는 지구환경의 파괴, 빈곤, 핵 확산, 국제테러리즘 등과 함께 인간안보의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최근 국가안보 보다 개인의 안전이 안보의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파괴, 경제·사회적 상황악화 등 광범위한 비군사적 요인으로부터도 제기된다. 사실 정치적 분쟁의 근원에는 경제적·문화적·인종적 불평등, 개발 등이 존재하므로 포괄적인 인간안보의 확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 유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전제에서 UNDP는 인간안보의 제요소를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 및 복지’, ‘사회정의’, ‘인권존중’, ‘환경보존’, ‘민주화’, ‘군축’, ‘법치’ 및 ‘좋은 통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요소간의 상호 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⁴⁷⁾

우리 인류는 나날의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코 평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제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갈등은 국가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점증하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불균등으로부

47) Overview of HDR 1994, “An Agenda for the Social Summit,” <http://www.undp.org/hdro/e94over.html>

터 나타나는 국가내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안보는 군사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 그 자체에 내재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안보 문제를 인류가 처한 공동의 위기의식의 발로로 지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안보의 중요도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나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며, 양 개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물론 국가안보와 대조되는 인간안보의 증진을 범세계적인 의제로 추진하는 데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국가안보가 인간안보를 실현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인가, 또 인간안보는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와 어떻게 조화하느냐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인간안보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개념과 분리하거나 대안으로 고려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안보는 한 국가의 경제, 군사적 우위를 잣대로 삼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과는 다르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곧 세계 전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안보’는 평화와 질서, 실업문제, 환경 및 생태계 보전,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등 전세계적 차원에 걸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위기의 극복을 문제 삼는 안보 개념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점점 많은 사안이 국가간 힘을 모아야 해결 가능한 것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⁴⁸⁾ 실제로

48) 대인지뢰금지협정 체결(1997,12), 캐나다-노르웨이간 Human Security

인권보호, 여성의 권익 향상, 지구 생태계 보전, 그리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금지 등 많은 이슈들이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할 시대이다. 따라서 인간안보 개념의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일련의 행동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⁴⁹⁾

한편 인간안보는 아직도 군사력 등 ‘경성권력’에 의한 국가안보에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민주화가 이룩되지 못한 국가에는 다소 경계심을 자아내게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인권 존중,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개발 협력 등에 적극적인 국가로서는 인간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국위를 제고시키는 데 바람직하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냉전이 종식된 후 지난 수년 동안 캐나다, 노르웨이 등 중진국들이 외교적으로 활용한 아이디어로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지역적이고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간안보 문제에 관한 구체적 의제를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⁵⁰⁾

3. 대안적 모색: 공동안보

Partnership 체결(1998.5), 국제형사법원(ICC) 설립협약 채택(1998.8) 등은 인간안보의 구체적 성과이다.

49)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이 분야에 대한 수 차례의 국제회의의 개최로 나타났다: 환경(Rio, 1992), 인권(Vienna, 1993), 인구·개발(Cairo, 1994), 사회개발(Copenhagen, 1995), 여성(Beijing, 1995), 인간정주(Istanbul, 1996).

50) 박수길(전유엔대사), <문화일보> 1999. 2. 18.

안보의 개념은 삶의 외적 조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점에서 안보의 개념은 한 인간을 자신의 내적 삶과 결합시키는 내적 의미를 규정하는 확실성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안보의 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은 외적 안보 자체를 개인이나 전체 민족의 삶을 희생시키는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신학자 본 회퍼가 “안보의 길을 통한 평화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했을 때 그는 이와 같은 왜곡을 우려했던 것이다.

안보를 위한 노력은 자유로운 자결을 통해 인간의 공동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과제의 틀 안에서 자기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개인 혹은 전체 사회들의 자의식이 안보조치들의 과시 즉 군사력의 발전과 연관된다면 그 목적은 상실된다. 그것은 군사적 무장과 사회의 군사화가 ‘국가안보’의 필연성과 더불어 논거지워지는 곳에서는 특히 어디에서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파손된 합법성의 기초를 내적 및 외적 적들의 차단을 통해서 그리고 군사적 힘의 과시를 통해서 조정하는데 기여한다.

전통적인 군사독트린들은 적의 불안정성을 자신의 안보의 결정적 전제로 삼았다. 그렇지만 핵과 대량살상무기체계가 보편화된 시기에 외서는, 군비증강의 역학 자체는 다른 측의 불안정은 오히려 자기 측의 위협의 정도를 높인다는 통찰력을 낳게 했다. 또한 공격이 최선의 방위라는 사고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비공격적 방어’(non-offensive defense: NOD)라는 대안적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⁵¹⁾ 이는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유명해진 ‘방어적인 방어’(defensive defense)라는 용어에서

착상을 얻어, 자국 군대의 위협적인 공격 역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비위협적인 방위태세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⁵²⁾ 고르바초프에게 있어서 ‘비공격적 방어’(NOD)는 군사적 개혁을 통해 경제재건을 이룩하려는 하나의 길이였다.⁵³⁾ 이러한 통찰로부터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이 나온다. 공동안보 논리는 각국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들을 포기하며 그와 같은 행동들의 처벌을 승인한다. 그것을 통해 성립된 정치적 질서의 신뢰성을 ‘상호간의 안보’로 규정할 수 있다.

안보에 합당한 조건들의 상호성에 대한 통찰은 핵무기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조건아래서 새롭게 발견되었다. 그것들이 강제하는 것은 개개의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을 충족시킬 관계들이 제도화되면 상호성의 조건들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편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적 안보’의 관념은 공동안보의 토대가 된다. 공동안보의 관념에서 과학·기술적 군사무기체계가 고도의 수준으로 발달한 현대의 정치적 안보는 적을 위해하거나 위압하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적과 협력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통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는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과 군비감축을 통해 증진된다.

51) NOD는 ‘비도발적 방위’(Non-Provocative Defense)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Thomas F. Lynch, III·유재갑 역, “군사적 안전보장과 그 대안 : 안정된 재래식 안보를 위한 새로운 “과업”,” Burns H. Weston 편저, 「대안적 안보론 - 핵억지없는 삶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2), pp. 25~29.

52) Anders Boserup, “A Way to Undermine Hostilit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44, 7 (September 1988), p. 16; Horst Ahfeldt, “New Policies, Our Fears,” *Ibid*, p. 24.

53)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제2장 및 제7장.

여기서 군축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의 증진과 평화 구축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군축과 공동안보의 증진 과정에서 적대자들의 상을 만들어내는 데서 나타난 왜곡된 현실인식 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적대자 상들로 나아가게 하는 메카니즘들의 계몽과 그것들과 결부된 위협사고의 비판이 공동안보의 증진과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IV. 군축과 평화

1. 군산복합체: 전쟁의 경제

가. 현대사회와 군사화

냉전은 끝없는 군사대결로 치달았던 그야말로 군사화의 시대였다. 냉전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과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군사화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탈군사화의 시대가 도래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현실에 우리는 당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냉전 시대에는 탈군사화의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망은 결국 빛나갔다.⁵⁴⁾

냉전은 모든 인류를 수십 회에 걸쳐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의 무한경쟁에 의한 공포의 체제균형으로 반세기 가량 지속되었다. 냉전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특성은 미·소 양 진영간 전면적인 전쟁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전시체제로서 상호 상멸의 가능성을 보유한 가운데 무력에 기반한 힘의 균형, 그에 따른 군비증강의 상승작용의 악순환 과정이 이 시대의 특징이었다.

54) 탈냉전에 따른 탈군사사회의 전망이 걸프전을 계기로 변화된 경우로는, Martin Shaw, *Post-Military Society: Militarism, Demilitarization and War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1), Preface viii.

핵무기의 개발은 냉전시대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절멸성’에 있다.⁵⁵⁾ 양 체제의 적대성은 상호 절멸성에 기반한 핵무기에 의해 전쟁 발발 가능성이 억지 가능성으로 바뀌었다. 억지란 적대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의 우위를 용납하지 않는 무력의 균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가 핵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로, 이는 핵무기의 증강을 정당화하는 그야말로 ‘미친’ 전략이었다. 상호확증파괴의 억지전략은 절멸의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무기의 절멸성은 아이러니컬하게 양 체제간의 전면전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온 동시에 각 체제 내에 ‘안보의 절대화’를 가져왔다. 체제의 극한적 적대성과 절멸 가능성은 안보의 절대화로 귀착되면서 마침내 군수산업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군사무기 기술의 개발 차원에서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냉전체제는 엄청난 수준의 군수업체를 양산하였다. 그런데 냉전 이후의 전쟁은 군수시장의 개척을 둘러싼 군수산업체들의 개입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⁵⁶⁾ 군수산업체들의 국제적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이 미국 군수업체의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도 관심을 끈다.⁵⁷⁾ 미국의 경우, 한쪽에서는

55) Myrdal, Alva(1976)·동서군축문제연구소 역, 「핵전쟁의 위협」 (서울: 동광출판사, 1984), 참조.

56) 김당, “세계는 지금, 미국 무기의 그늘,” <인간존중(격월간)> 제11호 (LG에드, 1995).

57) <한겨레신문> 1994. 8. 25.

국방비 감축이 항상 주요한 정치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군비증강과 군수물자의 대량 소비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호 배타적인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⁵⁸⁾ 결국 분쟁의 측면에서나 군비증강의 측면에서나 탈냉전은 탈군사 사회나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단지 새로운 사회역사적 및 기술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군사화의 내용이 변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존립의 근거를 물리적 군사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증대된다. 군의 존재이유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군현대화 또는 전력증강 문제는 특정 시기의 군사적 과제가 아니라 항상적인 이슈로 제기된다. 그런데 군현대화 및 전력증강은 대단히 많은 자원 동원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군사적 논리만으로 이 과제가 추진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군현대화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군사화의 논리가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국제관계의 현실이 군사화의 근원적인 동기로 작용한다면 군산복합체는 군사화를 추동하는 가장 직접적인 추동체라 할 수 있다.⁵⁹⁾

군사화는 군비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과정으로, 군국주의(militarism)를 추구하는 것과 군비증강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군국주의와 전쟁준비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군비증강

58) <동아일보> 1995. 12. 16; <한국일보> 1996. 1. 6.

59) 김진균·홍성태, 『군신과 현대사회 - 현대 군사회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 (서울: 문화과학사, 1996), pp. 21~22.

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예찬한다면 후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쟁준비는 모든 시대에 걸쳐 추구되었던 초역사적인 것이라면, 군국주의는 산업화와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또한 ‘방위’(defense) 및 ‘억지’(deterrence)는 전쟁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군비증강이라는 점에서 전쟁 준비와 구분된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대개의 경우 자국의 군비증강은 방위를 위한 것으로, 상대국의 군비증강은 전쟁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된다. 따라서 전쟁 준비와 방위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⁶⁰⁾ 그러나 바로 이 애매함이야말로 군사화를 정당화하는데 무척 유용하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노골적으로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방위력 증강의 명분으로 군비증강을 추구한다.

군사화는 ‘평화시의 방위력 증강’을 요청하게 된다. 여기서 경쟁국의 전쟁 준비에 대해 홍보하고 전사회적인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국위협론이나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의 약소국들을 ‘불량배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는 정책 등은 평화시에도 위협을 과대선전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의지 분위기를 유도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미국의 보험회사가 밝히고 있듯이 미국 무기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⁶¹⁾

전쟁 이미지를 미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전쟁영웅 만들기, 문학작품, 전쟁영화, 전쟁 장난감 등을 통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편견

60) Martin Shaw, 앞의 책, pp. 9~15.

61) 김방희, “미국 무기의 그늘 한국,” <시사저널> 1995. 4. 20.

과 왜곡된 관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⁶²⁾ 최근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오락의 워게임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과 전쟁의 심성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한다. 이 가운데 언론의 역할은 양면적이다. 베트남전의 경우처럼 언론이 반전운동의 분위기를 고양시킬 수도 있고, 거꾸로 걸프전에서와 같이 전쟁을 보면서 즐기는 전자오락과 유사한 게임으로 여기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CNN 방송은 걸프전 당시 전쟁의 참상을 잊어버리고 참혹하지 않은 ‘깨끗한 전쟁’도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세계적으로 유포하는데 기여하였다. 이것은 적을 악마시하는 원시적 이분법과 첨단기술을 언론이 적절히 활용한 결과였다.⁶³⁾ 사회의 군사화는 이처럼 다양한 수준과 방법을 통해 구성되는 전쟁관과 군사관에 기초하여 군은 자신의 역할과 의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게 된다. 이 토대 위에서 평상시의 전쟁준비의 한 형태로서 주기적인 군현대화와 군비증강을 실현해 나간다.

사회의 군사화는 경제의 군사화를 동반한다. 경제의 군사화란 전쟁준비 또는 방위력 보유를 명분으로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군의 영향이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주장이 일찍이 제기되어 왔으나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이 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경제의 군사화는 적대적 체제대립을 매개로 구조화된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

62) Patrick Regan, "War Toys, War Movies, and the Militarization of the United States, 1900-85," *Journal of Peace Research*, 31/1(1994).

63) 이남규, 「첨단전쟁—걸프전쟁과 첨단무기」 (서울: 조선일보사, 1992), pp. 125~6.

본주의는 경제의 군사화를 통해서도 변성한다는 사실은 갈브레이스가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군사케인즈주의’로 부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여기에 설비와 생산기술을 제공해서 이득의 배분에 참여하게끔 탄생했다”고 말했다.⁶⁴⁾ ‘군사케인즈주의’란 “케인즈 다음의 세계에 있어서, 병기지출 - 입안, 생산, 고물화, 대체라는 순환 - 이 케인즈가 노렸던 것을 대신”해 주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직한 경제학자라면 누구라도 군사지출이 근대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⁶⁵⁾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세계적 변화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경제의 군사화는 정치와 경제의 융합 현상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군비증강을 추구하고 있는 ‘군비증강의 지구화’로 인해 경제의 군사화는 군사경제의 향상화와 함께 2차 대전이래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왔다. 자본주의 경제의 군사화는 1차 대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는데, 이후 전쟁은 직접적인 군사력의 대결을 넘어 총체적인 국력대결의 차원으로 전개되면서, 바야흐로 모든 국가에서 군부중심시대가 열리게 되었다.⁶⁶⁾ 특히 1차 대전을 계기로 전쟁은 군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련되고 언제나 지속되는 사건이 되었다. 그리하여 평화시는 전쟁의 준비기로 되었으며, 전쟁이 평화를 규정하는 상태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러한 변화는 군의

64) J. Galbraith(1977)·김영선 역, 『불확실성의 시대』 (서울: 청조사, 1978), p. 323.

65) J. Galbraith, 앞의 책, p. 353.

66) C. W. Mills·진덕규 역, 『파워엘리트』 (서울: 한길사, 1979), p. 243.

권력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으며, 군수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⁶⁷⁾

나. 군산복합체와 전쟁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그의 유명한 고별연설에서 언급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⁶⁸⁾

최근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분쟁, 즉 2차 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군수산업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방대한 군사조직과 군수산업간의 결합은 미국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및 심지어는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그것의 전면적인 영향력은 어느 도시, 어느 주 정부, 어느 연방 정부의 사무실에서나 뚜렷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산복합체’와 ‘과학기술 엘리트’의 수중에 “잘못 놓여진 가공할 파괴적 권력이 생겨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경고했을 때, 이미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체계가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규모 ‘반공’ 전투의 열전에 의

67) 김진균·홍성태, 앞의 책, p. 27.

68) Dwight D. Eisenhower, “Liberty Is at Stake”(1961), in *Super-State: Reading in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eds., Herbert I. Schiller and Joseph D. Phillip(Urbana, Ill., 1970), p. 32; ‘고별연설’, 시드니 렌즈 외·서동만 편, 『군산복합체론』(서울: 지양사, 1985), 참조.

해 정기적으로 보장되는 냉전은 세입세출을 구성하고 일정 수준의 생산과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경제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기제였다. 그 결과 1951년에서 1990년까지 매년 국방부 예산이 모든 미국 기업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최고의 경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군사경제 경영의 최고 통수권자라는 역할 덕분에 그같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3만 5천개의 주요 계약기업과 약 10만개에 달하는 하청기업들이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중앙행정처 조달망에는 50만명이 고용되어 있다.”⁶⁹⁾ 간단히 말해서 미국방부는 일본의 통상산업성(MITI)에 해당한다. 이 기관은 중앙집권적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방위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⁷⁰⁾

군산복합체는 조직적 단일체가 아니라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이며 사실상 군산학복합체로 존재한다.⁷¹⁾ 밀즈는 군산복합체의 핵심을 정치, 경제, 군사의 3대 권력엘리트들의 결합으로 보았는데,⁷²⁾ 여기에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전은 전쟁의

69) Seymour Melman, “Military State Capitalism,” *The Nation* 1991. 5. 20, pp. 666~67; *The Demilitarized Society: Disarmament and Conversion* (Montreal, 1988), 참조.

70) Masao Miyoshi, “A Borderless World?: From Colonization to Transnationalism and the Decline of the Nation-State,” *Critical Inquiry*, sum., 1993 (<창작과 비평>, 1993 겨울), 참조.

71) 김진균·홍성태, 『군산복합체와 전쟁』 <이론>, 봄/여름호(1995), 참조.

72) C. W. Mills·진덕규 역, 앞의 책, pp. 16~49.

규모가 거대하고 무기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치세력으로서의 군부의 등장은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군은 더욱 전문화되고 민간 정치인은 군사 문제를 알기 어렵게 되어 전문 군부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군부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된 근저에는 산업화와 그에 따른 전쟁 양식의 변화가 놓여 있으며, 따라서 군부의 등장은 독점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진행되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날 군산복합체는 지구 곳곳에서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⁷³⁾ 예컨대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냉전시대에 최대의 핵국가인 미국은 모두 7만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으며, 비축량이 최고에 달했던 해는 1967년으로 당시 사용할 수 있는 핵폭탄의 수는 3만2천개였다. 또한 미국은 1940년대 이후 핵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핵무기 개발에 약 4조 달러를 사용했으며 이 금액은 2차대전에 사용된 전비의 3배에 해당한다.⁷⁴⁾ 핵무기의 위협이 일반인들의 두려움과 세금낭비의 근원이었지만 군수산업체에게는 거대한 이윤을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막대한 재정지원의 혜택을 누리게 했다.

일찍이 군산복합체의 성격과 역할을 연구한 렌즈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1946년부터 196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9,040억 달러의 예

73) WCED/조형준·홍성태 역,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1987), p. 360.

74) <한겨레신문>, 1995. 7. 14.

산을 군사력 증강을 위해 지출했는데, 이는 동 기간 예산 총액의 57.29%에 달하는 비율이었다. 반면 사회적 기능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960억 달러로, 이는 예산 총액의 단지 6.08%에 불과했던 점을 밝힌 바 있다.⁷⁵⁾ 이는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의 부분이 군사부문에 충당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대변한다. 특히 군수산업의 이윤율은 더욱 황당해서 최소 10%에서 최대 800% 정도까지의 큰 편차를 보인다.⁷⁶⁾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군수산업체는 미국 산업 전체의 평균소득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⁷⁷⁾ 이와 같은 고이윤은 안보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특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군사화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기제다. 군산복합체는 평화시에는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 군비증강 또는 끊임없는 신기술의 개발로 어제의 무기체계를 도태시키고 보다 정교하고 고가의 무기체계로 바뀌어나가는 작업을 계속한다. 평화시의 '전쟁준비론'은 경제의 군사화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으로, 흔히 국가안전 또는 미국이 언제나 내세우는 '세계평화의 수호'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수사로 치장됨으로써 그 본질을 쉽게 은폐한다. 그러나 군산복합체의 역할로 감출 수 없는 사실은 군비증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기적으로 전쟁을

75) Sidney Lens(eds. 1970)·서동만 편, 「군산복합체론」 (서울: 지양사, 1985), p. 43.

76) S. Lens·서동만 편, 앞의 책, pp. 47~51.

77) A. Buzuev(1985)·강동일 역, 「초국적기업과 군국주의」 (서울: 새길, 1985), p. 41.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전쟁은, 초국적 기업의 모든 이윤 추구형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현상으로 이해되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제한전의 형태이든 합동군사훈련이든 군수품의 대량 소비와 생산을 위해 긴장과 위협을 만들어 내고 전쟁을 기획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걸프전은 하나의 기획된 전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 전쟁 비즈니스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200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무기수출이 급증함으로써 군수산업체들은 전쟁특수를 통한 호황을 누렸다.⁷⁸⁾

다. NMD와 군비경쟁

군산복합체와 정치·경제 관계는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미사일방어체제(NMD)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부시는 2001년 초에, NMD에 관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방위를 위해 NMD 구축을 추진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다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⁷⁹⁾ 과연 미국의 방위를 위한 NMD는 무엇이며 어떠한 무기체계인가?

NMD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 등 미사일 개발 능력이 있는 '우려국가'(중전의 '불량배국가')들이 미국을 미사

78) 이병승, "걸프전쟁의 본질,"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소 편, 『걸프전쟁과 아랍민족운동』 (서울: 눈, 1991), pp. 133~5.

79) <http://www.donga.com>, 2001. 1. 9.

일로 공격할 것에 대비해 1980년대의 ‘스타 워즈’ 구상을 토대로 1996년경 부터 연구해왔다. 그러던 중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본격화됐다. 미국은 당시 북한이 ‘광명성 1호 인공위성’ 이라고 주장했던 미사일의 성능이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판명되자 북한이 2005년까지 미국 본토를 사거리에 들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석달 뒤 미국은 NMD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1단계로 2005년까지 △요격 미사일 20기 △조기경보 레이더 5기 △고화상 레이더 1기를 갖출 계획이다. 2011년까지는 4단계에 걸쳐 모두 600억 달러를 투입해 △요격 미사일 250기 △조기 경보 레이더 6기 △고화상 레이더 9기 △탄도추적 위성 24기 등을 구축할 구상으로, 이 중 1단계로 구축될 조기경보 레이더 5기 중 2기는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⁸⁰⁾

NMD 계획은 2000년 미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군사분야에 대한 지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민주당은 NMD에 대해서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더 강력한 NMD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NMD 계획에 대해선 미국 안에서의 논란을 넘어, 유럽과 중국 북한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계획이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NMD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고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기존 핵무기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핵무기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80) <http://www.donga.com>, 2000. 7. 3.

미국 내에서도 많은 핵물리학자, 핵전략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군산복합체의 지지 위에서 계속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군비증강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숨은 손’이라 할 수 있다.⁸¹⁾

미국의 NMD 구상은 외부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 내부의 정치·경제적 메커니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첨단 군사능력에서 잠재적 경쟁국가들과 가능한 한 최대한의 격차를 유지한다는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NMD가 방어 무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이 초래하는 전략적 불균형과 불안정을 주목해야 한다. 전략적 불안정은 방어와 공격의 무기체계에서 이중적인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NMD는 핵위기로부터의 해방을 핵무기 제거 및 효과적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과학기술적 처방으로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핵무기의 존속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욱이 미국의 독단적인 NMD 구축은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국의 경계와 강력한 반발은 중국의 핵전력 및 군비강화를 촉발할 우려가 크다.⁸²⁾ 이를 계기로 미일동맹은 한층 긴밀해지고, 동시에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칫 일본의 핵무장까지 정당화하는 조건을 조성할 수도 있다.⁸³⁾

81) 손호철, <http://www.donga.com>, 2000. 9. 13.

82) "'美 NMD구축엔 中 핵전력 강화'...中군비통제국장 경고', <NewYorkTimes> 2000. 5. 11; <http://www.donga.com>, 2000. 5. 11.

83) 이삼성,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과 미사일방어체제," <http://www.donga.com>.

미국의 NMD 계획은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의 우려를 낳게 했다.⁸⁴⁾ 영국 하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NMD계획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각료들에게 “영국내의 매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도록 촉구했다.⁸⁵⁾ 물론 러시아도 비판적 입장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비핵국 모임인 ‘뉴어젠더 연합’은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문 초안을 회의에 제출했다. 뉴어젠더 연합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 이집트 뉴질랜드 등 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이번 회의는 NPT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기회” 라면서, “모든 국가들은 NPT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제3세계의 미사일 개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제한적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며 “핵무기와 관련한 비현실적인 주장이 오히려 NPT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세계의 주장을 일축하였다.⁸⁶⁾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com, 2000. 8. 20.

84)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뉴욕에서 18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6차 이행평가회의 개막식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가 그동안의 핵 군축 노력을 후퇴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http://www.donga.com>, 2000. 4. 25.

85) <http://www.donga.com>, 2000. 8. 4.

86) <http://www.donga.com>, 2000. 4. 25.

북한은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에 대한 세계 여러나라의 우려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과의 TMD체제 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군사대국화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⁸⁷⁾ 또한 미국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미사일방위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미국-러시아간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조약을 수정하고 NMD체제를 기어코 수립하려 하고 있다면서, 강대국을 겨냥한 NMD체제 수립으로 세계에 대한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기도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미사일 방어체제 수립 추진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과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⁸⁸⁾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추진계획을 둘러싼 특징적 논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외부의 미사일 공격 위협보다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축 문제를 놓고 전개된 워싱턴의 무모한 정쟁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미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NMD 추진 논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한 사실 등이 관심을 끈다. 특히 미국 언론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맹국들은 NMD 논쟁에서 방관자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사일 위협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⁸⁹⁾ 즉, NMD 추진계획이 국방예산

87) <로동신문>, 2000. 7. 16.

88) <로동신문>, 2000. 7. 18.

89) <NewYorkTimes> 2000. 6. 23.

배정문제나 정치적 입장 관철 등을 둘러싼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군산학복합체의 깊숙한 이해관계가 은폐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NMD의 실전 배치까지 당초 국방부 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무려 600억 달러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하였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까지 △알래스카 중부에 요격미사일 100기 배치 △고해상도 X레이 레이더 체계 구축 △기존 조기경보 레이더 체계 개선에만 39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 모두 295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보고서는 국방부가 2010년까지 2단계, 2015년까지 최종 3단계 NMD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⁹⁰⁾ 천문학적인 예산이 충당되는 시기 동안 미국의 정계, 군수산업계의 사활적 이해관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연구개발 및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홍보하는 관련 학계와 연구소 등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도 한뼘하고 있다.

2. 남북한 군축과 평화

가. 군축과 신뢰구축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체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군축은 군비축소(disarmament)와

90) <http://www.donga.com>, 2000. 4.. 26.

군비통제(arms control)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자의 개념적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군비축소의 한 유형에 군비통제가 포함되기도 하고, 군비통제가 군비축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미국 행정부의 군축 문제 전담부서인 군축처를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로 부르고 있는 것도 군축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군비통제는 적대적 국가간에 상호 존재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 군비증강의 수단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군사력의 운용과 구조의 통제를 통해 그 위협을 제한하고 감소시킴으로써 기습공격과 전쟁 발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들을 의미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군비통제의 노력은 전쟁의 피해와 강도를 줄일 수 있고, 전쟁 대비를 위한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⁹¹⁾

군비통제의 개념적 전제는 역사상 전쟁 발발의 대부분의 원인을 잘못된 정보, 오해, 오산과 상호불신에서 비롯되어 왔다고 보는데 있다.⁹²⁾ 따라서 각종 군사정보의 교환, 부대이동이나 기동훈련, 부대 배치상황 등 주요 군사활동을 상대방에게 노출·공개하여 군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군사적 의도를 분명히 하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해·오판·불신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

91) *Arms Control and National Security: An Introduction* (Washington, D. C.: Arms Control Association, 1989), p. 10.

92) 이서항,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남북한 군축전망,”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참조.

보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곧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 또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로 불리는 부대이동 및 배치·기동훈련 등과 관련된 군사력의 운용을 통제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 유지를 위한 군비통제 논리는 역사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잘못된 정보와 오해 상호불신 등의 비계획적이고 우발적인 사태 발생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무리가 따른다. 근대국가체제가 수립된 이래 대부분의 전쟁은 군국주의에 의해 추동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이익의 추구와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의 향배에 따른 통치엘리트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오해와 잘못된 정보 등으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거나 전쟁 발생의 원인을 겉으로 드러난 데에서만 찾는 것으로, 전쟁 양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쟁 이유 자체가 뚜렷하지 않음으로 해서 곧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비통제 논리의 한계는 경험적으로 군비축소보다는 군비증강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다.

군비통제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적대국가간 오해·오판·불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미·소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한 동서간 군축은 대개 이러한 ‘운용적 군비통제’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방향에서 접근되었다. 그러나 미·소와 유럽의 경험은 공존의 원칙아래 협상국간의 정치적·군사적 현상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재래식 군비통제의 시금

석이 된 1975년의 ‘헬싱키 최종합의서’에서는 참가국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원칙으로 주권 평등과 주권 인정, 국경 불가침, 국가의 영토보존 존중 등의 인정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당사국간의 군사적 대칭성의 존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군사적 대칭성이란 보유한 병력 구조나 무기체계의 종류, 동맹구조 등이 서로 대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군비통제 대상이 되는 병력과 무기 및 장비들을 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 군비통제는 ‘대칭적 상호주의’ 모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소간 및 유럽에서 적용된 군비통제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군비통제의 한반도 적용방식으로 ‘비대칭적 상호주의’를 가교전략으로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⁹³⁾ ‘비대칭적 상호주의’ 방식을 적용한 군비통제 사례로 미국의 대러시아 안보지원 정책이나 제네바합의를 통한 대북 핵통제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 방식을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대북 경제지원 및 경협시에 이에 병행하여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대남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남북경협을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상생의 길로 보지 않고 마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시혜로 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큰 한계는 남한의 국력에 바탕한 군사력 수준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최근 남북한 군사력 수준에서 단순개수비교와 기타 계량적

93)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http://www.peacekorea.org/cyber/jinhwan.html>.

방법의 한계, 남북한 국방비의 재평가 등을 통해 북한의 대남우위에 대한 전통적 접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⁹⁴⁾ 대북 지원 및 경협에 대가로 '선북한감축' 또는 북한의 군사적 양보를 전제한 논리는 비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군비통제 논리는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과학·기술 시대의 현대전쟁의 대량살상과 파괴력에 의한 상호 공멸가능성이 전면전의 형태를 억제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군비통제 논리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군비증강으로 나아가기 쉬운 군비통제 방식보다는 군비와 병력수를 줄이는 군축이 평화 실현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된다. 여기서는 남북한 군비경쟁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군축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축론'과 남한의 '신신뢰구축 후군축'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군사적 대결 상태의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남한은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임에 비해 북한은 일관되게 군축을 주장해왔다. 이른바 남한은 '신신뢰구축 후군축' 논리를 견지해 왔다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군축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군축론은 특히 한반도에서 외군 즉, 주한미군 철수

94)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 사실과 평가방법 -,"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 1997, 참조.

주장과 연계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대안들의 제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축론은 군축의 실천적인 의지보다는 평화공세와 주한미군 철수의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한의 '선신뢰구축론'과 북한의 '군축론'의 상충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1992년의 「기본합의서」에는 남북한 양측의 주장이 그대로 병렬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조항 가운데 제12조는,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단계적 군축과 군사적 신뢰조성의 추진에 합의한다고 함으로써 서로 성격이 다른 논리를 함께 담은 합의문 형태가 되었다. 그러나 합의문 차원에 그치고 만 형태이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비롯하여,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 합의하였던 것이다. 물론 무력충돌의 방지,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남북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 조치는 전혀 이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북한의 군축론과 남한의 선신뢰조치 방안의 타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서로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이 모두 충구를 상대방의 이마에 겨누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상

상해 보자. 이 긴장 국면을 벗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누가 먼저 총을 내려놓겠는가? 아무도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서로가 상대방을 믿는다면 즉, 신뢰가 구축되면 총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그 역도 성립한다. 즉, 총을 겨눈 상태에서 어떻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총을 겨눈 상태에서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으므로, 서로 신뢰를 위해서는 당장 총을 내려놓자는 주장이 오히려 타당성을 지닌다. 물론 총만 내려놓으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은 일단 해결된다. 사실 서로 상대방의 이마에 총구를 겨눈 상태에서 한 손으로 악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기상황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뢰가 쌓인다는 보장도 없다. 아무리 한 손으로 악수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총을 놓지 않으면 신뢰가 쌓일 수는 없다. 즉, 참된 신뢰구축은 상대방을 겨눈 총구를 내려놓는데 있다는 논리가 보다 설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먼저 그러한 모험적인 결단을 내리겠는가? 바로 여기에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결단과의 괴리와 곤혹스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양자는 상호 모순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서 논리적인 선후 관계를 찾기 어렵다. 말하자면 남한의 '선신뢰구축론'이나 북한의 '군축론'은 모두 논리적 차원에서 자기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남북한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 수준 즉, 막대한 액수의 군비지출과 엄청난 군사적 밀집 상태인 남북한 군병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반도야말로 세계 최대의

화약고임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군비통제에 기반한 신뢰구축 논리의 타당성을 충분히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군비증강을 억제하고 군병력을 줄이는 감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군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나. 군축: 신뢰의 전제조건

한반도 평화구축은 남북한 화해와 신뢰구축에서 출발한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 모두 가공할 수준의 군사력과 군비경쟁체제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나는 데서 비롯된다. 아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한 군병력의 수만 보더라도 한반도가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이인가를 스스로 증명해 준다.

<표 1> 남·북한 및 주변4국 병력수

구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총병력	69만	117만	1,401,000	약2,820,000	1,159,000	242,000
예비	3,040,000	7,450,000	1,350,000	1,200,000+	약20,000,000	48,600

자료: The Military Balance 1998~1999(『국방백서 1999』 부록 ‘남북한군사력’)

남북한 병력을 합한 병력수에 3만7천의 주한미군 병력수까지 고려하면 무려 190만을 상회하는 수로, 이는 인구비례로 세계 최대의 병력 밀집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병력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끈다. 더욱이 예비병력의 수를 보면, 한반도 전체가 군사화된 사회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휴전선 250km에는 남북한의 170만 군이 대치한 상태임에 비해, 휴전선의 30배에 달하는 중·러 국경선(7,400km)에는 150만 정도의 양국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남북한 군은 6·25 때보다 약 100배 이상 화력이 증강되었다.⁹⁵⁾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 형태를 하루빨리 개선하는 방향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접근되어야 한다.

군비증강은 무기수입의 증대를 통해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의 경우 국방비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기수입에 지출되는 국방비 감소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⁹⁶⁾ 한국은 1995~1999년 사이 무기수입에 6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여 전세계에서 4위의 무기수입국 지위를 차지하였다. 미국 역시 국방비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1995~1999년 사이 전세계 무기시장 점유율 4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유율은 1990~1996년 사이 미국이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했던 점유율이 50% 내외였던 사실과 크게 달라진 상황이 아니다.(<표 2> 참조)

95) 이장, “남북한 군비현황과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 방위예산의 개선방안 토론회 (1994. 11. 9, 기독교회관 대강당) 발표자료, 참조.

96) 김현옥, “경제적 군축필요성 논의의 한계와 군축운동의 방향-군축담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 한국산업사회학회, 2000년 비판사회학대회(제3회) 「남북간 대립 사회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 상생적인 민족공동체의 구성을 위하여」, p. 155.

<표 2> 10대 무기수입국과 무기수출국(재래식무기수출입)

(단위: 백만달러)

순위	무기수입국(1995~99)		무기수출국(1995~99)	
	국가	수입액	국가	수출액
	전체	111,325	전체	111,325
1	대만	13,936	미국	53,443
2	사우디아라비아	9,231	러시아	14,628
3	터어키	6,461	프랑스	11,731
4	남한	6,011	영국	7,343
5	이집트	4,741	독일	6,085
6	인도	4,637	네덜란드	2,239
7	일본	4,343	중국	2,212
8	그리스	4,091	우크라이나	2,048
9	중국	3,994	이태리	1,965
10	UAE	3,268	캐나다	1,095

자료: SIPRI, 2000, appendix 7A, "The volume of transf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by regions and other groups of recipients and suppliers 1995~99"

더욱이 한국은 2000년에도 미국으로부터만 12억7,475만달러의 무기를 수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FAS, 2000). 결국 국방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다 무기 수입국 중의 하나인 한국과 최다 무기 수출국인 미국간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국방비 감축

으로 무기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대미의존성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신뢰구축 등 군비통제론에 토대를 둔 방위정책은 국방비 감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실례로, 궁극적으로 전쟁 억제와 평화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군비통제와 군축의 다섯 가지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⁹⁷⁾

군비통제	군축
1. 핵위협전술의 계속	1. 핵위협 대신에 대안으로서의 안보정책
2. 고차원이든지 저차원이든지 전술무기의 등률	2. 모든 대량살상수단의 감축
3. 무기배치와 무기사용의 합리성 주장	3. 군사력에 대한 의지의 거부
4. 강대국들의 지위 우선	4. 모든 나라들의 동일한 권리, UN의 강화
5. 안정의 강조	5. 사고와 제도들의 변화 강조

한편 북한은 경제력의 열세로 인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남한에 패배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기체계는 매우 노후화된 모델이며, 같은 소련형 장비에 비해서도 품질이 열악하다. 또 노후화된 무기나마 적절히 운영·유지할 수 있는 연료·부품·보급물자는 물론 군량미마저

97) A. Geyer, *The Idea of Disarmament*, 2.Aufl. Elgin1985/W.Huber·H-R. Reuter김윤옥·손규태 역, 『평화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21 2~13, 재인용.

부족하다. 특히 지난 수년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군사원조의 상실로 인한 무기수입의 극적인 감소는 북한의 군수 산업으로는 보완하기 어렵다. 오늘날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은 1994년 핵 위기 당시에 비해서도 현격히 감소했다.⁹⁸⁾ 1999년 6월 15일 서해 교전의 북한의 참패는 남북한 군사력 수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의 의지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고, 또한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라 불리는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등 저렴한 비용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한의 군사적 접근방법, 즉 군비증강을 통한 안보의 추구에 한계가 있다. 요컨대 남북한의 군비투자에는 이미 한계효용을 넘어선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70년대 지나친 군사력 중심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듯이, 남북한 군비경쟁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가를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군축은 신뢰의 전제조건이다. 군축없이 남북한간 신뢰조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 군축은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해마다 증가되는 엄청난 액수의 무기수입과 군비증강의 논리가 타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호 신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군축 이외에 평화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군축의 실천을 위해 UN 감시하의 상호 감군을 협상할 수 있다. 여기서 남

98) 1994년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의 40~60% 수준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함택영, “한반도 군사력균형과 군비경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제3장 참조.

북한 당국의 상호불신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UN이나 주변국의 중재와 보장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⁹⁹⁾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군축 문제의 현실적인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 문화와 군사화를 지양하고 군축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인식하는 군축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한다.

다. 북한 군축론

북한은 군축 문제를 198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¹⁰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에 따른 세계적 차원에서의 혁명역량의 와해, 동서독 흡수통합의 충격,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 남한의 국력신장과 그에 따른 국방력의 증강 등으로 인한 북한의 뚜렷한 열세 경향과 체제위기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전쟁 시나리오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의 연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¹⁰¹⁾ 이에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군축

99)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한 군사력의 수준은 각각 10만 정도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지만원, “‘협상 통한 군축’으로 신뢰 쌓아야,” <http://www.peace-korea.org/cyber/manwon.html>.

100) 김일성, <신년사: 1988. 1. 1>, 『김일성저작집』41(1995년), 참조.

101)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기념 경축보고대회에서의 한 보고: 1988. 9. 8>, 『김일성저작집』41(1995년).

제안과 더불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및 평화지대화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주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아래 인용문에서와 같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평화지대화 및 군축 등을 과감하게 들고 나왔다.¹⁰²⁾

우리는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과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 다국적군축회담...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며 다른 나라에 있는 침략군대와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철수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것은 현시기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 방지와 평화 수호를 위하여 군축과 핵무기 완전 폐기 특히, 주한미군과 미군기지의 철거를 주장하였다. 또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금지하고 지금 있는 핵무기를 감축하며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한반도의 비핵지대·평화지대화를 주장하였다.¹⁰³⁾ 사실 북한이 평화와 안전, 군축과 핵무기 철폐를 가장 긴절한 문제로 주장한 데에는 미국과 직접 대치하여 있고 전쟁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

102) 김일성,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축하문: 1988.10.18>, 『김일성저작집』 41(1995년).

103) 김일성,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위하여: 국제의회동맹 제85차총회 개막회의에서 한 연설: 1991. 4. 29>, 『김일성저작집』 43(1996년).

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위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¹⁰⁴⁾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또다시 군축을 제의하였다. 먼저 김일성은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북과 남은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군축을 실현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¹⁰⁵⁾ 그리고 남북한이 평화문제의 해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면서, 북과 남은 불가침에 합의한 조건에서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였다.¹⁰⁶⁾

북한은 서방세계에서 제안하는 군축은 “《군축》과 《완화》의 간판밑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책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¹⁰⁷⁾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군축 문제에 대한 남북간 인식차의 일단을 보여

104) 김일성, <인도네시아 《메디아 인도네시아》 신문사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92. 9. 1>, 『김일성저작집』43(1996년).

105) 김일성, <신년사: 1992. 1. 1>, 『김일성저작집』43(1996년).

106) 김일성,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 성원들과 한 담화: 1992년 2월 20일>, 『김일성저작집』43(1996년).

107)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 1990. 5. 24>, 『김일성저작집』42(1995년).

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한반도 평화와 군축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¹⁰⁸⁾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와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의 문제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은 평화와 체제안전의 보장은 미국측의 입장에 달린 문제로 인식하여 줄곧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남측과 군축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우리 정부 또한 군축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즉, ‘선신뢰구축 후군축’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군축 문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다.

3. 한반도 평화지대화 및 탈군사화

한반도 군축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지대화와 남북한 사회의 탈군사화를 지향해 나가는데 있다. 남북한 모두 과대성장된 군사기구를 과감히 축소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탈군사적’¹⁰⁹⁾ 평화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천명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른바 ‘자주’의 통일원칙은 평

108)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한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화 제안을, ‘남조선 인민들’의 지지와는 달리, 우리 정부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김일성, <스위스로동당대표단과 한 담화: 1988. 4. 24>, 『김일성저작집』 41(1995년).

109) Martin Shaw, 앞의 책, pp. 184~190.

화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평화와 자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이다. 사실 강대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힘들었던 우리의 경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가주권과 자주를 향유하기는 불가능했다. 거꾸로 약소국의 주권과 자주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패권적 지배구조는 안정적인 지역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아니다. 이러한 평화 보장의 길은 민족 내부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족 내부의 연대가 결여된 비균형적인 국제공조는 남북간 상호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평화의 길이 아닌 또다시 갈등과 대결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¹¹⁰⁾ 국내총생산력 수준의 현격한 격차, 기술산업, 군사수준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냉전적 발상에 불과하다. 남북한 경제총량 중 국민총소득(GNI)을 비교하면, 남한은 북한의 '95년/21.9배, '96년/24.2배, '97년/26.8배, '98년/25.1배에 달한다.¹¹¹⁾ 더욱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위협적 실체로, 주체사상에 기반한 유격대국가의 일상적 전시동원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체제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적 성격만 사라진다면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적당한 긴장 상태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110)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의 회수를 주장하는 논리는 미국의 ‘자주권’을 훼손시키는 발상으로 비현실적 제안이다.

111) 통계청(<http://www.nso.go.kr>),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참조.

모순 상황은 북한 주민의 고통 해소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주한미군은 전략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있지만, 동북아에서 평화의 교란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남북간 균열과 미묘한 갈등을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군축과 평화체제의 토대 구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¹¹²⁾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평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한동안 당혹해 하는 모습을 보였던 데에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야말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국가이익의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의 내용과 형태가 불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의 증진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참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우리 민족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의 ‘즉각적 완전철수론’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의 위상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철수 시기와 방법 등의 문제를 공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할 때이다.

112) 곽태환,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참조.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한다면, 주한미군의 위상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설정하고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¹¹³⁾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군은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유엔 평화유지군 형태이며, 다른 방안은 다국적 평화유지군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경우 미국의 주도적 역할아래 군소국가들의 군사활동은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형태를 띠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형식적인 형태 변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와 권한은 유엔 헌장 ‘제6장’을 준수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즉, 유엔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장은 국가간 분쟁을 오직 협상, 중재, 화해, 조정, 법적 해결 등 모든 평화적 수단의 강구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⁴⁾ 만약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발되는 경우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에만 그 역할과 권능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 헌장 ‘제7장’에 명기된 평화유지군의 ‘평화집행군’으로서의 역할¹¹⁵⁾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창설하는 경우에는, 남북한의 참가

113)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http://www.peacekorea.org/usfk/usfk02.html>, 참조.

114) Charter of United Nations, Charter VI,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http://www.un.org/aboutun/charter/index.html>).

115) Charter of United Nations, Charter VII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http://www.un.org/aboutun/charter/index.html>).

는 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국가들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의 창설을 모색할 수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 평화유지군 모두 한반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평화유지군의 병력 수와 규모는 상징적 수준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밀집도가 높을수록 주변국의 긴장을 초래하여 역으로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정치적 자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어느 일방의 패권적 세력이 관철되지 않는 중립지대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자주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지대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무장된 평화’를 넘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전쟁을 선호하는 가치보다 평화적 가치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활발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으로써 전 사회의 탈군사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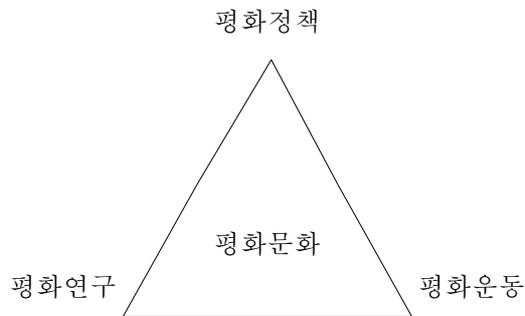
평화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무장해제가 이루어진 지점에서 꽃핀다. 그러나 군사적 무장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의 군사화, 경제의 군사화에 대한 ‘문화적’ 무장해제 없이 군사적 무장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축이 정당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쉽사리 긍정할 수 없는 다양한 논리체계, 인식틀 등의 이른바 ‘문화적’ 군사화의 요인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평화 유지를 위해서

는 군사력 균형이 필요하다거나, 한쪽의 일방적 군축이 다른 쪽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논리 등은 대중적 인식의 기반을 가진 문화적 힘이라 할 수 있다.

평화 문제에의 접근에 있어서 윤리적·규범적 문제들은 중요하다. 그것은 제도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에토스를 제공해준다. 야망, 이기심, 비정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윤리적인 힘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한다. 이러한 윤리적 입장을 전제로 평화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의 검토가 요망된다.

V. 평화문화 형성방안

평화문화(peace culture)는 평화연구(peace research), 평화정책(peace policy), 평화운동(peace movement)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론적·정책적·실천적 부문을 망라하는 긴장의 한 가운데에 있다. 평화문화는 이처럼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운동 뿐만 아니라, 평화윤리, 평화교육, 평화봉사 등 평화와 관련된 모든 실천적 활동과 이론적 이해를 위한 노력들 사이의 모든 접점에 자리잡고 있다. 평화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기서는 아래의 삼각형 형태의 각각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세 측면 즉, 평화연구, 평화정책, 그리고 평화운동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1. 평화연구

가. 전쟁과 평화연구

평화연구는 대개 전쟁 연구의 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곧잘 인용되는 베게티우스(Vegetius)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명제는 오늘날까지도 군사정치적 논리의 경구로 인용되고 있다. 이는 전쟁 자체가 평화의 수단이 된다는 것으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갈파한 바와 같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평화이다”는 역설을 일반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늘날 평화사상은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오고,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가 온다”는 비판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학에 있어서 이 말은 흔히,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이해하라”(Qui desiderat pacem, comprhendet bellum)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평화의 연구 즉 평화학은 평화 그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전쟁 또는 갈등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억제 방법 등에 관한 연구로 대체되어 왔던 경향이 있었다. 평화가 마치 ‘전쟁 부재의 상태’로 정의되어 왔듯이, 평화의 연구 자체도 전쟁의 연구에 종속되어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평화연구는 평화의 위협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들의 문제설정과 연구업적들이 단절되어서는 곤란하며 상호 연관된 노력을 통해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평화라는 공동의 과제들과 연관시키는 것이 평화연구의 목표다.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핵무기의 발전은 평화연구

를 위한 노력을 자극했다. 새로운 무기들의 성능과 파괴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연구의 창시자들이다. 그리고 평화의 개념과 평화연구와 관련된 이론 형성에 대한 체계적 관심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신학적·철학적 이해를 벗어난 국가관계 속에서 전쟁 연구와는 다른 독자적 연구체계를 갖추면서 대학과 연구소 등의 아카데미 영역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1950년대 이후부터의 일이다. 한편에서는 평화는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로서 과학·기술 시대의 삶의 조건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는 전쟁의 원인과 위협 효과들에 대한 연구, 갈등의 요인과 해소 방안,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군비축소 모델, 갈등 해결의 비폭력적 행동의 기회들에 관한 연구가 이 분야의 중요한 주제들에 속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시대의 전쟁은 인류 문명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 이래 평화연구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평화연구의 싹이 활짝 발화하지 못한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동유럽 국가에서 소련 중심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발에 대해 소련은 강제진압 등 무력 사용을 통해 공산체제에 대한 도전을 거부했으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시기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동서 진영 모두 전쟁과 무력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칠 수 있는 분위기는 침체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양 진영 내에서 모두 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되거나 심지어 반국가 행위로 매도될 수 있었다. 전세계적 차원의 냉전

체제하에서 미소 핵전쟁의 억제와 세계대전의 방지를 위한 공포의 균형 그 자체가 평화 유지의 상태로 인식되는 가운데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제3세계의 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국지전과 제한전 등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들의 엄청난 피해와 참상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어떤 면에서 이 시기는 핵무기와 미소 대결의 회피만이 평화 보장의 첩경으로 믿었던 시대였다.

동서 냉전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의 평화연구는 냉전시대의 평화연구의 대상과 방법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변화된 문제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핵전쟁의 공포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큰 전쟁의 가능성과 위험이 줄어든 상황에서 평화의 문제는 단순히 무력충돌이나 전쟁을 방지하는 조건과 전략에 관한 관심에만 한정될 수 없다. 이데올로기적 체제 대결에 기반한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국가간, 민족간, 인종간 전쟁은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연되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국가간 또는 국가내에서의 분쟁과 갈등이 새로운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사회에서의 평화연구(Peace Research)는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독일, 영국 등 유럽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에서의 평화연구(Peace Studies)는 국제관계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연구 보다는 점차 증대일로에 있던 국내적·지방적 수준에서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연구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의 평화연구는 아직도 게임이론,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량적 분석 기법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제정치학의 주류적 연구 경향으로 미국 학계의 평화연구의 일반적 방법론이다.

평화연구는 냉전시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체계적인 연구는 냉전의 역사와 더불어 전개되었다. 냉전 시대에 보다 전통적이고 주류적 연구경향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정치 및 전략연구와, 이와 근원을 달리 하는 평화연구 사이의 균열은 마치 학문적 경향에서 보수와 진보와의 갈림으로 나타나 보이는 측면도 있었다. 최근 주춤했던 평화연구는 과거의 연구 경향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큰 관심을 끌고 있다.¹¹⁶⁾

전쟁과 평화의 연구의 전통적 접근법은 크게 세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¹⁷⁾

첫째, 인간적 개인적 수준의 접근이다. 전쟁의 원인을 인간성에 내재해 있다고 보고 인간의 공격성, 전쟁본능을 순화시켜 내면적인 마음의 평화는 물론 나라 사이의 전쟁을 막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고대의 평화사상으로부터 현대의 갈등 해결의

116) 특히 스칸디나비아 평화연구학은 국제관계학과 안보연구의 토대 위에서 평화연구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Ole Wæver, "The Strange Successes of Scandinavian Peace Research: Why the inter-twined disciplines of Pea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evelop differently in the US, Scandinavia and other parts of Europe,"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In Search of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Seoul, January 25, 2000*, organised by the Korean Peace Research Association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17) 최상용, 『평화의 정치사상』 (서울: 나남, 1997), p. 18.

개성적 심리적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의 심성 그 자체를 문제삼는 가장 보편화된 입장이다.

둘째, 국가 수준의 접근이다. 이는 전쟁과 평화의 행동주체나 논의 거점을 개별 민족국가에 두고 국내의 정치개혁 또는 민주화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는 발상이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전제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가간의 교섭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수준의 접근이다. 어떤 형태로든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여 연맹이나 세계정부를 설립함으로써 평화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수준의 접근법은 상호 연계된 형태를 띠면서 고대 이래 평화 연구의 주된 관점으로 개인, 국가, 국제 및 세계체제적 수준에서 접근되는 방법론적 일반화로 이해되었다.¹¹⁸⁾

평화연구와 국제정치학은 모두 근대 국가체제의 수립과 함께 등장한 학문 영역이지만, 평화연구의 사상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은 국제정치학과 뚜렷이 대비된다. 양자는 각각의 접근방식과 독자적인 지적 계보를 지닌다. 예컨대 평화연구는 칸트적 지적 전통을 가진다면, 국제정치학은 마키아벨리적 전통 위에 있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나. 평화연구의 패러다임

갈통이 개발한 평화연구의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연구의 주제에 접

118) Robert C. North, *War, Peac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Conceptual Synthesis* (Westview Press, 1990), pp. 9~25.

근해보자.¹¹⁹⁾ 갈통은 평화연구를 ‘진단(Diagnosis)-예측(Prognosis)-요법(Therapy)’의 삼각형 모델을 통해 평화연구를 마치 환자의 임상에 임하는 형태로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진단’은 증상, 병력,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의 정보를 데이터 처리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예측’은 주어진 정황 변수들, 이를테면 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이론에 기반한 예측을 말한다. 그리고 ‘요법’은 건강의 소극적이거나 적극적 가치들의 지침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로부터 일반화된 가치 및 이론적 기반을 지닌 개입 행위를 뜻한다. 진단은 우선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다. 과학으로서 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자세한 처방전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질병과 더욱 세분된 형태의 분류 체계는 한층 세련화되었다. 이처럼 분류 체계가 세분화됨으로써 동일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동일한 ‘예측’을 내리도록, 나아가 동일한 ‘요법’을 요하도록 분류될 것이다. 여기서 진단(D), 예측(P), 요법(T)의 3자간의 상호 조정 과정이 개재된다.

평화연구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D)-예측(P)-요법(T)의 삼각형 모델의 역동성을 적용시켜 데이터 분석과 이론적 예측들을 토대로 평화 구축의 구체적 방법의 모색을 시도한다. 이처럼 의학 연구나 건강 과학과 유사한 방식의 평화연구 패러다임에서 ‘진단’은 평화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예측’은 “사태가 심각하게 진전될 것이다”, 그리고 ‘요법’은 “경찰이나 군 또는 UN의 개입이 필요

119)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PRI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1996), pp. 24~39.

하다”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적용하여 평화연구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진단: 폭력의 상태
- 예측: 폭력의 과정들; 증가, 동일, 감소
- 요법: 폭력 감소의 과정들(소극적 평화);
향상된 삶의 과정들(적극적 평화)

평화연구는 어느 면에서 폭력과 고통의 문제를 명백히 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폭력의 원인과 결과는 곧 평화의 원인과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폭력은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폭력은 언제나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상하게 한다. 구조적 폭력은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폭력들은 구조적 침투, 분열, 붕괴 및 사회적 소외 등에 의해 조장된다. 문화적 폭력은 그 내용에 따라 종교, 법과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경험-형식적 과학, 과학, 우주론(심오한 문화) 등으로 구분되며 학과, 대학, 미디어 등을 통해 나타난다.

소극적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 부재의 상태이다. 이에 비해 자연적 평화는 투쟁이 아닌, 종(種)들의 협력상태이다. 직접적·적극적인 평화는 말과 신체적인 친절로 이루어져,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의 기본적 욕구, 생존, 복지, 자유, 정체

성에 호소한다. 사랑은 이를테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축도이다.

구조적·적극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균등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를 통합으로, 분열을 연대로, 소외를 참여로 대체한다. 문화적·적극적 평화는 폭력의 정당화를 평화의 정당화로 대체하는 것으로 종교, 법,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과 과학 그리고 학파, 대학 그리고 미디어 등의 다양한 부문을 통해 적극적인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게 된다.

폭력과 평화의 관계는 다음의 공리가 적용된다.¹²⁰⁾

-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 어떤 종류의 평화도 또 다른 평화를 낳는다.
- 적극적 평화는 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다.

특히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 보복과 공격적인 반응을 낳는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완성된 폭력의 재생산을 낳고 문화적 폭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한다면, 구조적 폭력은 혁명적이고 반혁명적인 직접적 폭력으로 이끈다.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킨다.

120) Johan Galtung, 앞의 책, p. 32.

다. 상생(symbiosis): 갈등 전환 및 해소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갈등의 규모가 크고 작거나, 또는 갈등의 내용이 역사적·구조적으로 뒤엉켜 상호 상충하는 내용이 심각하거나 그와 달리 꾸준한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거나 간에 갈등 없는 시대와 사회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평화는 결코 고요한 정적 상태를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순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해소시키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말하자면 평화는 구체적으로 갈등의 전환이나 변형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 갈등에는 구조적 폭력이 있다. 정치적인 갈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의 억압이, 경제적인 갈등의 경우엔 생존 조건이나 복지의 착취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을 둘러싸고 지배엘리트층은 피지배층의 갈등 구조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아래로부터의 의식화를 억제하려 든다.

폭력의 유형은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세 차원의 삼각형 모형으로 상정할 수 있다. 폭력은 삼각형의 어떤 꼭지점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 쉽게 전달된다. 제도화된 폭력적 구조와 내면화된 폭력적 문화와 더불어 직접적 폭력은 또한 장기간에 걸친 복수전처럼 제도화되고, 반복되고, 의식화(儀式化)되려는 경향이 있다. 폭력의 이와 같은 삼각형적 증후군의 고리를 끊는다는 먼저 문화적 폭력의 해소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문화적 평화가 형성된다면, 이는 다양한 상대들간의 공생적이고 동등한 관계와 더불어 구조적 평화를 낳고, 나아가 협력 활동이나 우정과 사랑을 통해 직접적 평화를 산출하는 평화 신드롬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구조적 갈등 전환과 해소 방안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갈통이 제시한 네 가지 구조적 갈등 극복 방법을 살펴보자.¹²¹⁾

첫째, 대결(confrontation)이다. 이것은 갈등의 중심이 되는 한 쟁점을 선택하는 행위이다.¹²²⁾

둘째, 억압과 착취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struggle)이다. 이는 갈등의 극복과 평화의 창출이라는 전제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폭력적 수단에 호소해야 가능하다. 갈등은 모든 당사자가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확신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셋째, 단절(decoupling)이 있다. 이는 억압자나 착취자들로 부터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간디의 ‘비협력운동’이나 ‘시민불복종운동’ 등은 이 사례에 해당한다.

넷째, 재결합(recoupling)이다. 단절은 장기적 목표가 될 수 없다. 장기적 목적은 수평적 구조이다. 재결합은 억압보다는 인권을, 착취보다는 평등을, 침투보다는 자율을, 분열보다는 통합을, 분리보다는 연대를, 차별화보다는 참여를 위한 수평적 조직을 지향한다. 이러한 재결합은 보다 새롭고,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덜 폭력적인 구조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121) Johan Galtung, 앞의 책, pp. 93~4.

122) 인도의 간디의 ‘소금행진’(1930년 4월)은 목적과 쟁점을 분명히 내세운 비폭력적 대결의 전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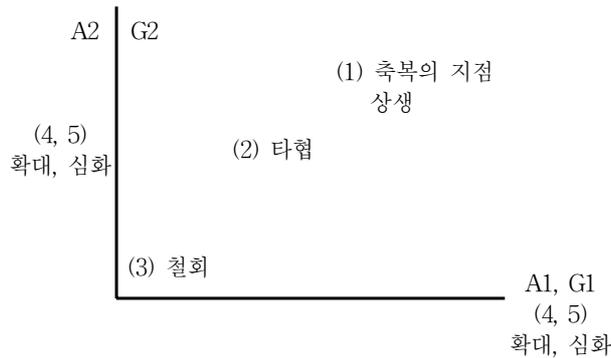
이와 함께 갈등 전환에 관한 일반적인 세 가지 공식을 검토해보자.¹²³⁾ 여기서 우리는 이익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이 행위자로 되는 지점까지 구조적 갈등이 전환되었거나, 특정 행위자가 자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목표 실현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우리는 이제 갈등의 기본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국면은 물론 실제 상황 보다는 분석을 위한 교과서적 상황에 가깝다.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은 아주 복잡다단한 논쟁과 딜레마가 뒤섞인 미묘한 갈등들의 거대한 응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전환은 대개 단순화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한다면, 갈등의 초보적 형태도 현실에 개략적이거나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갈등 양상도 어느 정도 단순한 형태의 갈등 양상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 상황을 단순화시켜 접근하는 방식은 갈등 해결의 패러다임에 상당한 통찰력을 부여한다.

아래 그림표와 같이 초보적 갈등 양상을 도식화 함으로써 갈등 전환 형태의 ‘철회, 타협, 상생’의 패러다임을 설정해 보자. <표 3>은 두 행위자로 이루어진 초보적인 갈등 형태를 상징하고 있다. 두 행위자 A1과 A2, 그리고 두 개의 목표로는 G1과 G2(A1, A2; G1, G2)로 구분된다. 만약 $A1=A2=A$ 의 상황이라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더욱이 $G1=G2$ 일 경우 우리는 좌절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두 행위자는 일단 논쟁 과정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상황

123) Johan Galtung, 앞의 책, pp. 95~9.

에서 $G1=G2=G$ 라면 동일하면서도 경쟁적인 목표로 논쟁은 끝나버린다. <표 3>은 갈등 형성의 과정과 전환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표의 다섯 지점은 각각의 지점에서 두 행위자와 두 목표의 수용성과 지속성이 획득될 수 있는 잠정적 형평 상태를 가리킨다. 갈등의 영원한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지만, 각 지점은 갈등의 '전환'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어느 구석에 갈등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잔재는 인접한 갈등 잔재들과 합쳐져 새로운 갈등을 형성할 수도 있다.

<표 3> 갈등 전환의 기본 도표



갈등 연구학에서 자주 발견되는 용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표의 (1), (3), (4), 그리고 (5)를 흔히 승리, 승리·패배, 패배·승리, 패배·또는 패배, 승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선 이러한 용어들은 기계론적인 것으로 갈등 전환의 저변 과정에 대해 어떠한

암시도 함축하지 못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하나의 게임으로 보는 즉, ‘게임이론’으로 알려진 갈등 연구로 바뀌어버리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러한 용어들은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생사의 문제가 달린 갈등의 심각한 이미지를 환기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갈등 상황에 깊이있게 개입하는 것도 아니다. 승리, 패배니 하는 용어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뉴스가 오락물로 변해버리듯, 거실에서 게임할 때의 재치스런 용어가 마치 죽고살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의 메타포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이제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갈등 전환에 관한 이른바 상생, 타협, 철회의 3가지 공식을 비교해보자.¹²⁴⁾

① 상생(Transcendence)¹²⁵⁾: 장애물이 극복되고 목적이 달성된 상태를 뜻한다. 갈등의 상생적 해결은 장애물이 대수롭지 않거나, 갈등 해결을 위한 감춰진 자원들이 있을 때, 그리고 목표가 재조정되었을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물론 상생은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창조적인 과정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고 독특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창조한 것으로 갈등 전환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다.

124) Johan Galtung, 앞의 책, pp. 95~99.

125) *Transcendence* 는 철학용어로 ‘초월,’ ‘선협적인 것’ 등으로 옮길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갈등 당사자 모두가 함께 이익에 되는 창조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상생’(相生 symbiosis)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타협(Compromise): 갈등 해결을 위해 야망과 목표를 성취 가능한 한도까지 낮춘다. 이는 목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흔히 현실적으로 되어야 함을 말한다. 타협은 물론 상생 보다는 못한 형태를 수용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절제 또는 중용의 지혜가 필요하다.

③ 철회(Withdrawal): 간단히 말해, 당분간 또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버린 채 한동안 또는 영원히 잊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무관심과 인내가 요구된다.

이 세 가지 결과는 비록 대칭적이거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목적 달성 과정에 있어서 협력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으로 상충하는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는 내적 대화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적 대화를 통해 접근해 나간다.

상생, 타협, 철회의 세 가지 형태는 서로 복합적으로 뒤섞이거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갈등의 가장 창조적인 해결 방식이 상생적 형태라면, 타협은 주로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철회는 갈등 해결을 위한 용기가 없고 가장 비생산적인 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세 형태의 결과는 두 행위자에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갈등의 딜레마와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내적 또는 외적 대화를 통해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각각의 수준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협력적인 관계가 발생한다. 위 도표의 대각선상에 놓여 있는 세 형태는 모두 불협화 상태보다는 조화 상태를 가리킨다. 이 세 형태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4)이든 또는 (5)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두 개는 각각 설명이 필요한 불협화 상태를 가리킨다.

상생, 타협, 철회의 세 형태의 갈등 해결 방식을 널리 알려진 사례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적용해 보자. 갈등 관계의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중해 동부 지역을 차지해야 하는 근거로 성서의 약속된 땅이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다른 쪽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인들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해결 방안으로 하나는 ‘타협’이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평의회 1988년 11월 15일의 결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두 국가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타협안이다. 그것은 반드시 50-50이거나, 70-30, 90-10일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100-0일 수는 없는 그런 타협안이다. 그리고 이 갈등 관계에서 ‘철회’는 쌍방이 모두 그들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두 당사자들 모두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를 제3자에게 즉, 역사적으로 과거의 로마제국, 셀주크 터어키, 오토만 제국이든, 국제연맹 또는 영국이든 누구에게든 양보해 버리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관계에서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적 방식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분명히 두 개의 분리된 자치형식이 아닌 하나의 공동자치 형태일 것이다.

‘상생’은 분명 주목할 만한 개념이다.¹²⁶⁾ 상생은 갈등 당사자 모두의 승리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부부간 여름 바캉스 계획을 짤 때, 산으로 가자는 주장과 바다로 가자는 주장이 서로 대립할 경우,

126) ‘TRANSCEND’ 개념으로 평화학의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움직임은, <http://www.transcend.org> 참조.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제주도를 선택한다면 양자가 모두 만족하면서 갈등은 창조적으로 해소된다. 이러한 상생의 창의성은 앞에서 예와 같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한 관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서도 많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 상생의 방식은 이처럼 폭력을 피하고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해답이라 할 수 있다.

2. 평화정책

평화정책은 정치사상적 전통에서는 평화 체결과 평화 유지의 기술을 의미한다. 이리 평화정책은 평화의 현재를 지향하고 있다.¹²⁷⁾ 평화정책의 이러한 전통은 전쟁은 민족들의 역사적 삶 가운데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암시적으로 전제한다. 전쟁을 제한하고 가능한 종식시키는 것,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 상태를 오래동안 유지하는 노력들은 평화정책의 목표이며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된다. 그와 같은 과제들은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평화정책의 목표로 지속되고 있다. 평화정책은 물론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들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정책은 단지 평화의 현재를 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를 함께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평화는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와 생존이 서로 결

127) W. Huber·H. R. Reuter/김윤옥·손규태 옮김, 『평화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p. 13.

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 책임은 평화의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화정책으로서 미래의 삶과 결단 가능성들을 위한 책임을 지향해야 하는 정치적 행동들을 평화운리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¹²⁸⁾

평화사상이 평화정책으로 구현된 경우는 독일 통일의 토대를 닦았던 브란트(Willy Brandt)의 동방정책으로 나타난 평화정책을 손꼽을 수 있다. 브란트는 1971년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의 오슬로 연설인 ‘우리 시대에 있어서의 평화정책’에서 평화정책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¹²⁹⁾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날 국가이익은 평화를 위한 전체적 책임에서 분리될 수 없다. 모든 외교정책은 이 견해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유럽 및 세계적 안보정책의 수단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국경선을 초월해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브란트는 이미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평화의 확보야말로 실천적 이성의 명령이며, 평화정책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된 현실정치라고 강조하였다.¹³⁰⁾ 평화는 그냥 오지는 않는다. 그는 평화를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며,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평화 추구를 위

128) W. 후버·H. R. 로이터, 앞의 책, p. 13.

129) W. Brandt, 『브란트회고록』 (서울: 중앙일보사, 1976), 참조.

130) W. Brandt, *Der Wille zur Frieden*(Hamburg, 1971), p. 354/이영기, “테탕트 정치의 평화사상,” 최상용 편,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92), p. 44, 재인용.

해서는, ① 자기 위치의 명확성과 목표에 대한 적절한 평가, ② 상대방의 이익과 목표에 대한 적절한 평가, ③ 공동이익의 영역을 마련하고, 양측에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것, ④ 실제적 합의의 대상을 넘어 평화 유지로의 공동 인식을 통해 그것을 다함께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도덕적 원동력 등을 평화정책의 내용으로 삼았다. 그는 전쟁은 결코 정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천명했던 것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정책은 한민족의 피침의 수난사와 피동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역학관계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창조해 나가는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갈등 구도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존망이 달린 문제로,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사자를 비롯하여 주변국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창조적인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21세기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한반도는 지난 세기의 역사적 조건과는 달리 주변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에 규정되지 않는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 지역 패권국가의 세계전략과 그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대외정책의 결과라는 피동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평화를 극복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창의와 의지를 반영한 평화정책의 수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남북한 합의에 바탕을 둔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평화정책은 전쟁의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당면한 과제의 해결과 미래지향적 전망의 제시를 추구해야 한다.

21세기를 맞이한 현 단계의 한반도의 상황은 지난 세기와 같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한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분단과 냉전으로부터 탈냉전과 평화통일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능동적 국가로 위상을 정립해야 할 단계라는 점에서 평화통일과 대외관계의 정초를 마련할 수 있는 평화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안보 개념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국가들의 상호 관련 구조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는 종래의 쌍무적 안보 관계 구조를 벗어나 국가간 ‘민주성’의 원칙아래 실질적 평화 관계 수립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전체 구성원을 포함하고 핵심적 분쟁 사안이나 군비요인을 최대한 포괄하는 다자간 지역안보 협력구조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군비축소 문제는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 6개국 중심의 안보협력대화체 창설 제안은 1988년 이후 1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20회 이상 다양한 형태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한 정책 현안이다.¹³¹⁾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 구상은

131) 참가국을 동북아 6개국(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으로 제한한 다

이 지역에서 시도되는 매우 생소한 평화구축 방안으로 구성국간의 다양한 이질적 요소로 인해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평화구조 수립의 절실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3. 평화운동

평화운동은 서구와 동구에서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사회의식의 변화는 냉전의 종식에 기여하였다. 생태학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운동도 먼저 인류의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인식에 의해 추동되었다. 서구에서 전개된 평화운동은 대규모 단일 형태의 운동인 반전·반핵운동으로 집약되어 냉전체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였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평화운동은 약화되었거나 운동 형태를 변화시켰다. 서구사회에서는 이제 평화운동을 축으로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열정은 가라앉았으며 가까운 장래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냉전후 유럽 사회의 주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탈군사질서의 발

자간 안보협의체 제안은 정부차원 공식 제안 8건 및 정부차원 비공식 제안 6건, 그리고 민간차원의 공식협의체 제안 1건(NEACD) 및 민간차원 비공식 제안 2건 등 17건의 제안이 제기되었다.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방안,” 『안보정책 연구논총』(I)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0. 8), 참조.

생과 함께 평화운동과 정부간의 이해관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적이 없는 국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군국주의의 쇠퇴로 특징지어지는 국가들은 기존의 군사동맹체제나 민족적 대립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역적 분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격적 전쟁을 수행하려는 동기를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렵다. 지난날 평화를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다면, 현 단계의 평화는 과거와 아주 다른 함의를 지닌다. 여기서 정부와 평화운동 단체와의 이해관계간의 일치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양자는 이제 대립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에서 활동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서구사회에서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가 더 이상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비서구사회의 현실은 분명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분쟁 양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각성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국사회에서 평화운동은 날로 고조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화운동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평화주의(pacifism)는 평화의 적이 될 수 있다. 평화주의자들이 무장 상태로 방치하는 호전주의자들은 상대국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려 하는 한 자국의 행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전쟁을 개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쟁을 정당화한다. 평화를 외치면서 싸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주의로 몰

락하여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악한 이데올로기에게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행위가 된다. 평화는 물론 전쟁 도발자들 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는 그것을 방어하고 지켜나가려는 우리의 열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점차 퇴조하고 평화가 수립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전쟁은 하나의 사회제도이며 단순히 개인간 폭력이 대규모로 분출된 것은 아니다. 전쟁은 기획되고 조직화된 대규모 폭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야만적으로 변하게 된다. 전쟁은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타산적인 합리주의와 기술에 의해 더욱 더 교묘하게 지배되면서 파괴력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군대도 역시 하나의 사회제도이다. 사회제도는 인간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만들어진 인위적 창조물이며 군대의 목적은 평화를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전을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군대가 바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때문에 군대를 보다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군사력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왔다. 그런데 강력한 군대의 존재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와 평화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세계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테면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군대가 거꾸로 평화의 적이 되는 이율배반적 모순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망하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 수단으로서 군사력과 군사적 위협을 사용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특히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개입되는 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쟁은 너무나 파괴적이며, 인간 사회가 안전보장을 위해 대규모

군사력의 잔혹성에 계속 의존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일은 너무도 값비싼 대가이다.

전쟁을 위협하는 군사력은 더 이상 그 목적에 충실한 사회제도가 아니므로 다른 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평화적인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폭력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우리가 전쟁으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의 하루는 항상 불화 속에서 해가 뜨고 갈등 속에서 해가 지는 나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폭력적인 충동, 가공할 무기, 유독성 폐기물, 기아 상태의 빈곤, 기타 조직적인 폭력시위, 테러행위 등이 사라진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폭력과 전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어두움을 불평하기보다는 한 자루의 초에 불을 당기는 일이 더욱 소중하다.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화를 신념화시켜야 하며,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민의 9할 이상의 인구가 6개 종교에 속해 있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나라에서 우리 만큼 “종교가 다원적인 사회, 그리고 비교적 관용하고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별로 없는” 세계에서, “이 거래와 이 땅이 인류공동체를 위한 종교와 평화의 ‘거룩한 실험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신념 등이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¹³²⁾ 평화운동이 실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까

132) 이윤구,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p. 88.

답은 바로 관념 속에서 머무는 평화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과 평화문화: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

국가는 일차적으로 국방과 안보를 중시함으로써 평화문화 창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수준에서 강력한 평화문화를 창출한 경우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닌 중간 수준의 국력을 지닌 국가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사례를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ICBL)을 들 수 있다.¹³³⁾ ICBL이 주축이 된 지뢰금지운동은 1996년 ‘특정채래식무기협약(CCW)의 지뢰사용금지 및 제한과 유엔의 대인지뢰금지협약 촉구 결의안(’96년 12월)을 이끌어냈고 ‘오타와협약(’97년 12월)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그후 이 협약은 1999년 3월 1일 국제법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98년 ICBL은 이 협약을 줄곧 반대해온 미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개의 ‘불량배국가’까지 끌어들여 145개국의 서명을 얻어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러시아, 중국, 쿠바 20여개국은 참가를 유보한 상태이다. 미국은 한국을 예외로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입을 거부했다.

133)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유엔과 미국부무 자료를 인용해 지구상 64개국에 1억 1천만개 이상의 대인지뢰가 묻혀 있다고 발표했다. ICRC는 이집트 2천3백만개, 이란 1천6백만개, 앙골라 1천5백만개, 아프카니스탄·이라크·캄보디아 각 1천만개, 베트남 3백5십만개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전세계에 매설된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데 1,100년간 330억 달러가 소요된다. 대인지뢰에 인한 인명피해는 연간 2만6천에 이른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분에 한명 꼴로 지뢰에 의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80%가 민간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인지뢰금지운동은 평화군축운동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군축은 일반적으로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ICBL은 NGO가 중심이 되어 수많은 나라의 정부를 협약의 서명에 참여시킨 평화운동이다.¹³⁴⁾ ICBL에 가입한 1천여개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제적십자위원회,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를 참여시켜 대인지뢰 금지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시켰다. ICBL은 일반적 의무로 각 협약 체결국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대인지뢰를 사용하는 행위와, 직접 및 간접적으로 개발, 제조, 획득, 비축, 보유하거나 타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였다.¹³⁵⁾

지뢰는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무기로 오래동안 비난받아왔다. 전쟁은 적과 우리 측을 구분하는 행위이나, 20세기의 전쟁은 적도 아니고 우리 측도 아닌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전쟁의 비인도적 측면이 한층 부각되게 되었다. 지뢰는 인간이 만들고도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라는 점에서 가장 비인도적 무기로 지적되었다. 지뢰는 한꺼번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대량살상 무기는 아니나, 영구히 그치지 않고 느슨한 전쟁상태를 유지하며 인간성을 파괴하는 무기이다. 지뢰의 비인간성과 부도덕성은 여기에 있다.

‘국제대인지뢰금지캠페인’(ICBL)을 조직한 조디 윌리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적 연대를 통해 캐나다의 오타와협약을 이끌어내고

134)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소개,” <http://landmine.peacenet.or.kr/kcbl.html>.

135)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전문>, ‘제1조 일반적 의무’ <http://my.netian.com/~poignant/main/peace/지뢰/convention.html>.

133개국 정부가 이에 서명하도록 했으며, 65개국이 국회비준까지 받게 한 업적으로 그녀와 ICBL은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계기로 대인지뢰금지운동은 국제적으로 확대되었다.¹³⁶⁾ 이는 평범한 한 여성과 세계시민의 연대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훌륭한 사례로, 21세기 평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쾌거였다. 이처럼 전쟁과 무기 개발의 독점적 주체인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시민운동을 통해 변할 수 있으며, 시민운동이 여러 나라의 정부들을 국제협약에 서명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NGO의 평화운동이 국제사회의 각국 정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국제 NGO의 평화운동에 자극받아, 한국에서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세계질서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주목된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1997년 11월 24개 민간단체가 모여 결성된 이래 한국의 대인지뢰 조사와 피해 실태 그리고 한국 정부의 오타와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¹³⁷⁾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

136)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는 미국의 '베트남참전용사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상이군인들이 그들이 매설한 지뢰를 밟고 희생된 사실을 알면서부터 독일의 메디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1991년 11월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전개하였다. (<http://www.mct.go.kr/vision2000/e-profile23.html>).

137) 오타와협약은 대인지뢰의 전면 금지, 4년 이내 모든 비축지뢰의 폐기와 10년 이내 매설된 지뢰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탐지불가능한 지뢰는 매설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약간 느슨한 금지 수준인 특정재래식무기협약(CCW)에는 가입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나라에는 전방의 군사지역이 아닌,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문화유적지 그리고 서울, 부산, 울산, 대구, 포항 등 도심 주변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 2000년 10월 현재 총 21곳에 지뢰가 함부로 매설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대인지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기도 했다.¹³⁸⁾

138) “이슈추적: 후방지역 지뢰매설실태,” <한겨레21> 제334호(2000. 11. 23) 참조.

VI. 결 론

평화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 및 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 1990년대에 와서 서구 사회에서는 대규모 모적인 평화대행진이나 대중시위 형태의 평화운동은 소강상태에 빠졌으나,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NGO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¹³⁹⁾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탈군사화된 사회를 지향하는 대안적 안보구조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새삼 제기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일단 사회의 탈군사화를 위해 국가, 다국적 기구, 유엔, 그리고 비정부기구 및 종교단체 등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는 군축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방비의 축소와 군비경쟁의 종식은 평화 실현의 첫걸음이다. 세계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한 지금도 엄청난 군사비를 쓰면서 군비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천문학적 수준의 군비가 국방비에 투입되면서 전쟁에 의한 인류의 파멸적 재앙은 지구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경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집도를 가진 지역으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불막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은 항상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반평화적인 군사문화에 짓눌려 정상적인 사고와 삶의 패턴이 왜곡되고 인간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경우도 경험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139) Elise Boulding, *Culture of Peace: The Hidden Side of History*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pp. 268~72.

군부중심의 전체주의적 동원체제의 고통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군비축소야말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첩경이며 군비 축소 없이는 남북한의 참된 화해·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가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군비경쟁의 폐해와 군비축소의 긍정적 효과를 널리 알리는 군축교육과,¹⁴⁰⁾ 적어도 군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군축분위기의 확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탈냉전 시대 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평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축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군축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성간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국가안보와 군축의 딜레마 속에서 군비통제·군축은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수준을 심화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평화운동의 실천적 맥락 속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군비경쟁은 한 민족의 장래를 암담하게 하는 악몽의 시소게임으로, 모두에게 이익에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이러한 평화교육은 두 측면을 지향하고 있다. 하나는 ‘평화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peace)과, 다른 하나는 ‘평화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140) Alessandro Corradini, "Disarmament Education as a Distinct Field of Study," in Marek Thee(ed.), *Armament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Paris: The UNESCO Press, 1981), pp. 328~37.

peace)이 그것이다. '평화에 관한 교육'은 왜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평화를 위한 교육'은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태도, 의사결정, 행위를 이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교육이다. 전자가 주로 평화에 관한 올바른 인식의 배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실천 및 참여하려는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화에 관한 정보, 지식, 사고 등의 교육을 중시하는 '평화에 관한 교육'과 함께 평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이 군축 문제에 직접적인 결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평화교육이 군축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은 군축에 대한 확신과 가치체계를 배양함으로써 군축 실현의 사회적 토양을 다지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평화교육은 군축을 위한 비전과 장기적인 전망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교육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를 바로 잡는데 직접 기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인간의 육성과 사회적 토양의 확보없이 아무런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평화교육은 매우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에 도덕·정치교육의 광범한 틀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⁴¹⁾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덕·정치교육은 시민적 덕성 함양과 함께, 단지 전쟁과 평화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문제들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하는 광범한 교육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도덕·정치교

141) Patricia White, "비판에 대한 대응비판의 논리(1987)," David Hicks·고병현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p. 78.

육은 정치인들이나 대중 매체의 주장들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덕·정치교육은 지적 교육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화교육에 대한 비판자들조차도 아무런 비판을 제기할 수 없는 용기, 관용, 인내, 동정, 건강한 지적 회의 등의 덕목들을 함양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요컨대 평화의 의식화와 평화행위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는 평화교육의 핵심은 이웃과 인류의 운명과 삶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의 극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²⁾

평화연구는 아직도 하나의 자기완결적 학문 체계를 구축한 상태는 아니지만, 인문학, 사상사, 철학, 신학, 종교학 등의 모든 분과 학문의 초대를 통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기대된다. 폭력과 평화에 관련된 심인적(心因的) 동기체계인 평화문화의 연구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만을 평화학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의 전통적이고 교조적인 연구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평화에 대한 보다 풍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갈등 해소와 평화 전통의 확립을 위한 인식 지평의 확대와 더불어, 평화문화 형성을 향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때이다.

142) 이삼열, “평화교육의 철학과 과제,”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앞의 책, p. 14.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방부. 『국방백서 1999』. 서울: 국방부, 2000.
- 김구. 『白凡逸志』. 서울: 교문사, 1980.
- 김진균·홍성태. 『군신과 현대사회 - 현대 군사회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 -』. 서울: 문화과학사, 1996.
- 번스 H. 웨스턴 편저. 『대안적 안보론 - 핵억지없는 삶 -』. 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2.
- 백종천·이민룡. 『한반도 공동안보론』. 서울: 일신사, 1993.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백운선 옮기고 씀.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 - 유엔과 유네스코의 평화선언 자료집』. 서울: 오름, 1995.
- 이남규. 『첨단전쟁—결프전쟁과 첨단무기』. 서울: 조선일보사, 1992.
- 이리에 아키라(入江 昭) 지음/이종국·조진구 옮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이케다 다이사쿠·요한 갈통 대담집/손대준 옮김. 『평화를 위한 선택』. 서울: 신영미디어, 1997.
- 최상용. 『현대평화사상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92.
- _____. 『평화의 정치사상』. 서울: 나남, 1997.
-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열린종교와 평화공동체』. 서울: 대화출판사, 2000.

- 한스 J. 모겐소·이호재 역. 『현대국제정치론(*Politics among Nations-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서울: 법문사 1987.
- A. Buzuev(1985)·강동일 역. 『초국적기업과 군국주의』. 서울: 새 길, 1985.
- Arms Control Association, *Arms Control and National Security: An Introduction*. Washington, D. C.: Arms Control Association, 1989.
- Arnold Wolfers, *Discord and Collaboration Essays on International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2.
- Augustine, trans., by William Chase Green, *The City of Go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Barry Buzan·Ole Wever·Jaap de Wilde,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 C. W. Mills·진덕규 역. 『파워엘리트』. 서울: 한길사, 1979.
- Elise Boulding, *Culture of Peace: The Hidden Side of History*. Syracuse University Press, 2000.
- Gareth Evans, *Cooperating for Peace*, Australia: Allen & Unwin, 1993.
- Immanuel Kant, *To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1795*.
- J. Galbraith(1977)·김영선 역. 『불확실성의 시대』. 서울: 청조사, 1978.

- J. Habermas·홍기수 옮김. 『정치문화 현실과 의사소통적 사회비판이론』. 서울: 문예마당, 1996.
- Janine Chanteur, trans., by Shirley Ann Weisz, *From War to Peace*. Westview Press, 1992.
- Johan Galtung and Carl G. Jacobson, *Searching for Peace*. London: Pluto Press, 2000.
-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PRIO: Sage Publication, 1996.
- John A. Vasquez, *The War Puzzle*. Cambridge: CPU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1993.
- Martin Shaw, *Post-Military Society: Militarism, Demilitarization and War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1.
- Mikhail Gorbachev·고명식역, 『페레스트로이카』. 서울: 시사영어사, 1990.
- Myrdal, Alva(1976)·동서군축문제연구소 역. 『핵전쟁의 위협』. 서울: 동광출판사, 1984.
- Olof Palme: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Common Security: A Blueprint for Surviva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 Raymond Aron, trans., by Richard Howard and Annette Baker Fox,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Inc., 1967.
- Reinhold Niebuhr,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 New York: Scribner's, 1953.
- Robert C. North, *War, Peace,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Conceptual Synthesis*. Westview Press, 1990.
- Robert Mandel, *The Changing Face of National Security: A Conceptual Analysis*.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94.
- Sidney Lens(eds. 1970)·서동만 편. 「군산복합체론」. 서울: 지양사, 1985.
- UNDP, Dr. Mahhub Ul-Hag, *Human Development Reports*. 1994, 1998.
- W.Brandt. 「브란트회고록」. 서울: 중앙일보사, 1976.
- W.Huber·H-R.Reuter/김윤옥·손규태. 「평화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WCED/조형준·홍성태 역. 「우리 공동의 미래」. 서울: 새물결, 1987.

2. 논문

- 곽태환.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착.”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구영록, “국가중심주의와 평화체제.”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 (1997).

- 김당. “세계는 지금, 미국 무기의 그늘.” 『인간존중(격월간)』 제11호 LG 애드, (1995).
- 김방희. “미국 무기의 그늘 한국.” 『시사저널』 1995년 4월 20일.
- 김진균·홍성태. “군산복합체와 전쟁.” 『이론』 봄/여름호 (1995).
- 김현욱. “경제적 군축필요성 논의의 한계와 군축운동의 방향-군축담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 『남북간 대립 사회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 상생적인 민족공동체의 구성을 위하여』. 한국산업사회학회, 2000년 비판 사회학대회(제3회), 2000년 9월 22일-23일.
- 미백악관.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1998. 10)” 세종연구소, 『국가전략』봄·여름 제5권1호 (1999).
-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성방안.” 『안보정책 연구논총』(I)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0. 8.
- 이병승. “걸프전쟁의 본질.”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소 편, 『걸프전쟁과 아랍민족운동』. 서울: 눈, 1991.
- 이삼열. “평화교육의 철학과 과제.”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 이서항. “군축협상의 사례분석과 남북한 군축전망.”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2.
- 이윤구. “열린사회의 종교교육.”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종교간 대화와 인류의 평화』. 서울: 원화, 1992.

- 이장. “남북한 군비현황과 방위비 삭감의 필요성.” 방위예산의 개선 방안 토론회(1994.11.9, 기독교회관 대강당) 발표자료.
- 임현진·김병국·공유식. “왜 결손국가인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 대한 역사사회과학적 단상.”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 아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1993년 4월 9일).
- 조용환. “국가보안인가, 국민보안인가?: 인권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안.” 『아시아 국가보안법하의 인권 침해』. KONUCH, SEOUL, 1993.
-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 사실과 평가방법 -.”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37집1호 (1997).
- _____. “한반도 군사력균형과 군비경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 홍용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1953-1960.”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36집3호 (1997).
- Acharn Sulak Sivaraksa, “Buddism and A Culture of Peace,” in David W. Chappell, ed., *Buddhist Peace Work: Creating Cultures of Peace*. Boston: Wisdom Publications, 1999.
- Alessandro Corradini, “Disarmament Education as a Distinct Field of Study,” in Marek Thee(ed.), *Armament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Paris: The UNESCO Press, 1981.
- Anders Boserup, “A Way to Undermine Hostilit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44, 7 September (1988).
- Arnold Wolfers, “National Security as Ambiguous Symbol.”

- Political Science Quarterly*, December (1952).
- Carl G. Jacobson and Kai Frithjof Brand-Jacobson, "Our War Culture's Defining Parameters: Their Essence; Their Ramifications." Johan Galtung and Carl G. Jacobson, *Searching for Peace*. London: Pluto Press, 2000.
- Donald E. Nuechterlein,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A Time for New Approach." *ORBIS*, Spring (1979).
- Dwight D. Eisenhower, "Liberty Is at Stake. (1961)" in *Super-State: Reading in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eds., Herbert I. Schiller and Joseph D. Phillip, Urbana, Ill., 1970.
- Frank N. Trager and F. N. Simoni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in F. N. Trager and P. S. Kronenberg, eds., *National Security and American Society*.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1973.
- Hans J. Morgenthau, "Ano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s Review*, December (1952).
- Immanuel Kant, translated by Ted Humphrey, "On the Proverb: That May be True in Theory But Is of No Practical Use(1793)."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83.
- Joseph S. Nye and Sean M. Lynn-Jones, "International Security

- Studies: A Report of a Conference on the State of the Field.” *International Security*, Vol. 12, No. 4 Spring (1988).
- Kai Frithjof Brand-Jacobson, with Carl G. Jacobson, “Beyond Security: New Approach, New Perspectives, New Actors.” Johan Galtung and Carl G. Jacobson, *Searching for Peace*. London: Pluto Press, 2000.
- Masao Miyoshi, “A Borderless World?: From Colonization to Transnationalism and the Decline of the Nation-State.” *Critical Inquiry*, sum., 1993 <창작과 비평> 겨울(1993).
- Ole Wæver, “The Strange Successes of Scandinavian Peace Research: Why the inter-twined disciplines of Pea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evelop differently in the US, Scandinavia and other parts of Europe.”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In Search of Pe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Seoul, January 25, 2000. organised by the Korean Peace Research Association and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Patricia White, “비판에 대한 대응비판의 논리(1987).” in David Hicks·고병헌 역,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1993.
- Patrick Regan, “War Toys, War Movies, and the Militarization of the United States, 1900-85.” *Journal of Peace Research*, 31/1 (1994).

Paul A. Kowert, "National Identity: Inside and Out." The Origins of National Interests, *Security Studies* Vol. 8 Numbers 2/3 Winter 1998/99-Spring (1999).

Seymour Melman, "Military State Capitalism." *The Nation*, May 20 (1995).

3. 기타

『김일성저작집』

『동아일보』

『로동신문』

『문화일보』

『한겨레21』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NewYorkTimes』

<http://www.donga.com>,

<http://www.mct.go.kr/vision2000/e-profile23.html>.

<http://www.peacekorea.org/usfk/usfk02.html>

<http://www.transcend.org>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전문 1
조 일반적 의무, <http://my.netian.com/~poignant/main/peace/>

- 지뢰/convention.html
- 이철기.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http://www.peacekorea.org/usfk/usfk02.html>
- 지만원. “협상 통한 군축’으로 신뢰 쌓아야.” <http://www.peacekorea.org/cyber/manwon.html>
- 킨히데 무사코지. “국가안보 국가지대에서 인간안보 사회지대로 - 일본의 한 시각 -.” <http://www.humanrihgts.or.kr/HRLibrary/HRLibrary8-kb7.htm>.
-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http://www.nso.go.kr>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소개. <http://landmine.peacenet.or.kr/kcbl.htm>
-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고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http://www.peacekorea.org/cyber/jinhwan.html>
- Charter of United Nations, Charter VI,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http://www.un.org/aboutun/charter/index.html>
- Charter of United Nations, Charter VII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 <http://www.un.org/aboutun/charter/index.html>
- Overview of HDR 1994, “An Agenda for the Social Summit,” <http://www.undp.org/hdro/e94over.html>
- Victor P. Karunan, “아시아 인권상황: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Forum-Asia, 1994.10.15-17, 망콕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8-kb22.html>
- 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en, <http://unesdoc>.

130 한국사회 평화 문화 형성방안 연구

unesco.org/ulis/ged.html

"Manifesto 2000" <http://www.unesco.or.kr>